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2014 ~ 2018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일러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은 우리 민족의 정수이자 인류의 자산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문화재수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 기본계획 추진경과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시행(2011.2.5)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문화재수리 체계를 확립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2)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직원이 참여하여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와 체계화 작성을 거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본계획 구성 및 추진방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등 3개의 핵심 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한 현황 분석 및 정부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이 기본계획을

광역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통보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중요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한 것이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제시된 핵심 대과제별 세부과제 및 실천과제에 따라 관할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품질 확보 대책 및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등 수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통한 문화재원형 보존·계승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변화하는 문화재 환경과 국가 재정여건을 적절히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과제별 재원확보는 각 단위 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반영해 나가고, 국가재정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별 추진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본방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는 아래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리 기본원칙 및 핵심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가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 문화재수리 등의 품질 확보 대책
 - 문화재수리 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시·도는 세부 시행계획의 확정 전에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한다.
- 시·도는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우선 순위,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또한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총괄적인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재원규모 산정 및 연차적인 필요예산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목 차

I.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개요 14

- 1. 계획의 배경 14
- 2. 계획의 목적 및 범위 15
- 3. 계획의 성격 및 작성 방향 17
- 4. 문화재수리 정책 방향 18
- 5. 계획의 주요 내용 19

II. 문화재수리 관련 현황 32

- 1. 문화재수리의 개념 32
- 2. 문화재수리 사업의 종류와 운영 내용 33
- 3. 지정문화재 유형별 수리 현황 36
- 4. 문화재수리와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과 운영 현황 39
- 5.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절차 62
-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과 체제 65
- 7. 문화재수리업 및 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67

Ⅲ. 문화재수리 환경 진단 78

- 1. 문화재수리 관련 인식도 78
- 2. 문화재수리 현황 분석 81
- 3. SWOT 분석 83
- 4. 종합 분석 및 정책 방향 84

Ⅳ. 세부과제 및 실천계획 89

-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89
 -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90
 - 1-1-1.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90
 - 1-1-2.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92
 -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94
 - 1-2-1.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94
 - 1-2-2.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96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98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99
2-1-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99
2-1-2.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101
2-1-3.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103
2-1-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105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107
2-2-1.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107
2-2-2.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109
2-2-3.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112
2-2-4.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113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115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116
3-1-1. 문화재감리 시행	116
3-1-2. 문화재 수리 직영사업 실시	118
3-1-3. 문화재 수리 현장점검 개선	120
3-1-4.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 확대	121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123
3-2-1.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123
3-2-2.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125
3-2-3.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126
3-2-4.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127







I.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개요

1. 계획의 배경
2. 계획의 목적 및 범위
3. 계획의 성격 및 작성 방향
4. 문화재수리 정책 방향
5. 계획의 주요 내용

I.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개요

●● 1. 계획의 배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신설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1.2.5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행정적 의무 발생

■ 최초의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 및 시·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장기계획의 지속성, 체계성을 유지

■ 문화재수리 환경과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반영 필요

- 전통 수리기법 계승 및 재료 수급 등이 어려워지는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와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정책에 반영 필요성 대두

■ 문화재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필요성

- 기존에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수리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좌표를 설정하여,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문화재수리 정책 수요를 선도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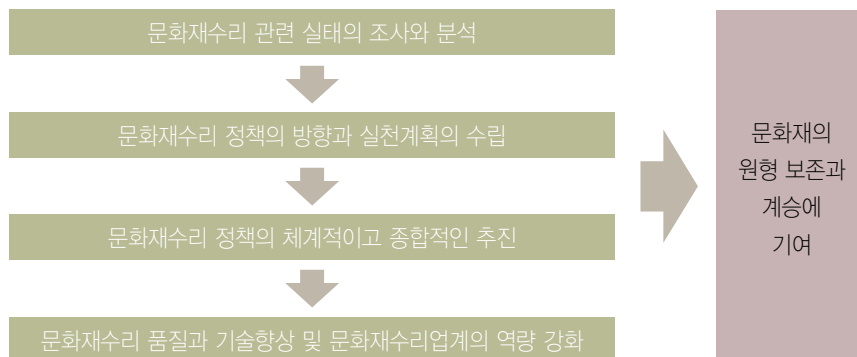
●● 2.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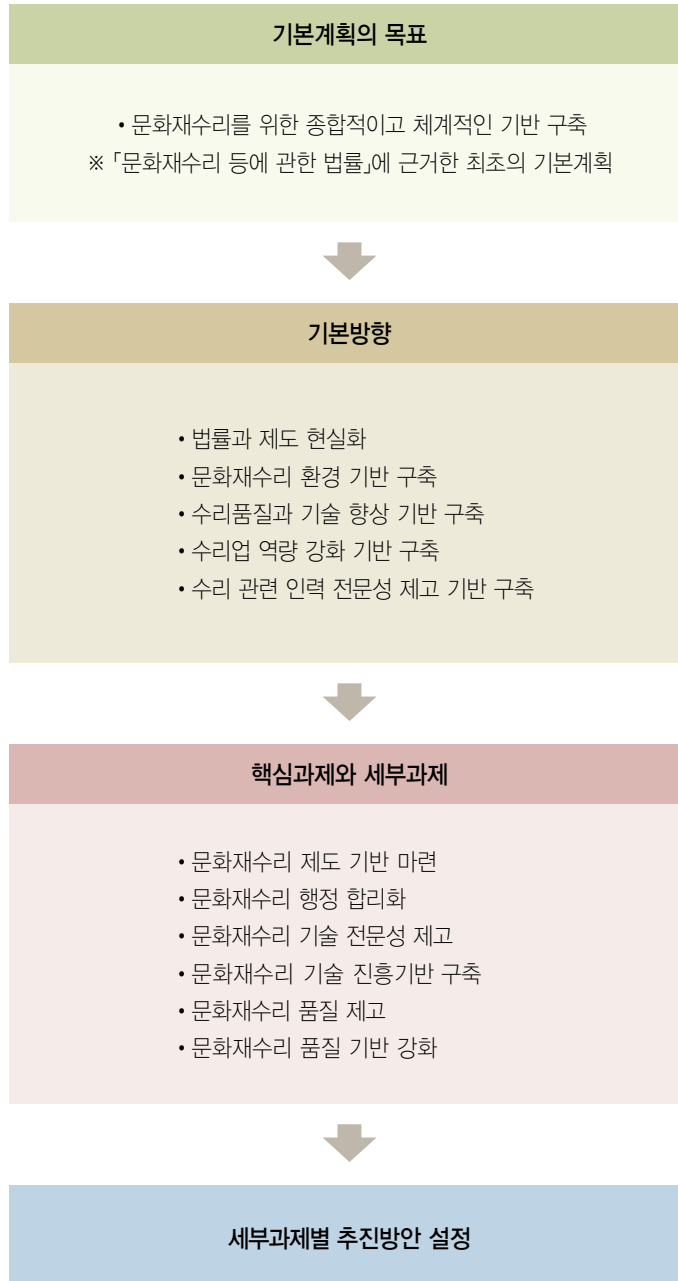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현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문화재수리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기술향상, 그리고 문화재수리업계의 역량 강화 및 문화재수리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2018년 (계획기간 : 5년)
- 내용적 범위
 - 포괄적 범위의 문화재수리, 즉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를 대상으로 함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가지정문화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조경물 포함)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함



가. 계획의 내용



●● 3. 계획의 성격 및 작성 방향

■ 계획의 성격

법정계획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

종합계획

- 현 실태 조사 분석 등을 통해 문화재수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설정

상위계획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행정 주체의 행위지침으로 기능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 의무

■ 작성 방향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주요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구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현 실태 조사 분석 및 지난 5년간의 성과 등을 분석

●● 4. 문화재수리 정책 방향

핵심 전략

법률과 제도 현실화
문화재수리 환경기반 구축
수리품질과 기술향상 기반 구축
문화재수리업 역량강화 기반 구축
수리 관련 인력 전문성제고 기반 구축

정책 목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계승에 기여

●● 5. 계획의 주요 내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에 아래 항목을 포함하고, 현 실태를 조사 분석한 사항을 담아 주요 세부 과제를 작성하였음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 ▶ 문화재수리 등의 품질 확보 대책
- ▶ 문화재수리 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이에 따라 구성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정책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2	4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2	8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2	8
	3건	6개	20개

■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재정 구성

5개년 기본계획(2014~2018)
738.88억 원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12억 원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5억 원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253.18억 원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16.9억 원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390억 원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61.8억 원

■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억 원)

주요 정책 과제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2	2.5	2.5	2.5	2.5	12
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0.8	0.9	0.9	1.2	1.2	5
3.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26.78	109.92	107.88	4.25	4.35	253.18
4.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1.53	4.27	3.7	3.7	3.7	16.9
5.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30	90	90	90	90	390
6.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2.46	14.07	13.07	14.1	18.1	61.8
총계(국비+지방비+기금)	63.57	221.66	218.05	115.75	119.85	738.88
국 비(92.3%)	54.57 (85.8%)	209.66 (94.6%)	206.05 (94.5%)	103.75 (89.6%)	107.85 (90%)	681.88 (92.3%)
지방비(57%)	9 (14.2%)	12 (5.4%)	12 (5.5%)	12 (10.4%)	12 (10%)	57 (7.7%)
기 금(0%)	-	-	-	-	-	0

■ 재정 운영방향

- 계획기간 중 총 소요예산 : 738.88억 원
 - 국비 681.88억 원(92.3%), 지방비 57억 원(7.7%)
- 정부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한 역점사업 중심으로 구성
- 2014년 예산은 확정예산을 반영, 2015년 이후의 예산은 예산 증가율, 사업의 연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 추정 계상
 - * 다만 문화재감리비가 포함된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항목은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 반영
- 재원 확보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수정 반영해 나가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시기 조정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 문화재 원형 보존·계승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수리 제도 기반 마련
- ◎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 정비

❖ 사업개요

- ◎ 소요예산 : 12억 원(국비 12억)
- ◎ 사업내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각종 기준 정비 등

- 문화재수리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법령 개정 지속 정비를 통해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 관리 관련 법률 일부 개정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의 복원 및 활성화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기준강화, 부실공사 관련자 행정처분 기준강화, 하도급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고, 거짓통보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한 법령 개정 추진
 - － 고증설계, 설계변경, 준공설계, 전 과정에 실측설계기술자 지속 참여 의무화 제도 마련
 - － 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및 등급 관리 세부기준 마련
 - － 의무감리 대상을 수리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운영의 공인전문기관 위탁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상시 정비·보급 및 모니터링
- 문화재수리 재료 전반에 대한 규격·품질·제작 기준 마련
 - － 전통안료, 전통철물, 미장 재료, 구들 등 재료별 기준 마련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 추진방향

- ◎ 문화재수리 평가제도 개선 시행 등 합리적 수리 행정 기반 마련
- ◎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 지도 등 합리적 수리 행정 강화

❖ 사업개요

- ◎ 소요예산 : 5억 원(국비 5억)
- ◎ 사업내용 :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기술지도 지원 등

-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투명성 확보의 바탕이 되는 합리적 수리 행정 기반으로서 **문화재수리 평가제도 개선 추진**
 -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연구용역('14, 1억 원)을 통해 문화재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시 평가 전환 등 합리적 평가 방안 수립
 -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확대 추진
- 분권교부세 대상인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현장점검 지도 실시 확대를 통해 합리적 수리 행정 구현
 - 수리현장 우수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확대
- 문화재수리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확대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 추진방향

- ◎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의 핵심인 기술자료 축적 및 기술역량 강화
- ◎ 설계심사·기술지도 개선 및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등 전문성 제고

❖ 사업개요

- ◎ 소요예산 : 246.23억 원(국비 246.23억)
- ◎ 사업내용 : 기술자료 발간, 설계심사·기술지도, 부재보존센터 구축 등

- 분권교부세 대상인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통합관리 확대 추진을 통해 문화재수리 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법제화
 -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통합관리 실시
-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협회 협력 확대 실시
 -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술대회 매년 개최
- 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에 직결되는 문화재수리종사자 기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 문화재수리 관련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및 워크숍 확대 실시
 - － 수리현장 우수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부여
 - － 문화재수리기능자 직무 및 소양교육 강화
 - － 문화재수리기술자·감리원 의무교육 실시
 - － 자격 미취득 문화재수리 종사자 수리 교육 실시

- 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의 핵심인 **현지설계심사 활성화**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술지도 확대**
- 설계심사위원회 및 기술지도 위원 인력풀 확대
- 국제적 수준의 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근간이 되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운영**
 - 건축부재 보존·연구·전시·교육 및 수리 관련 DB 구축
 -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 전통건축부재보존 센터 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추진**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 추진방향

- ◎ 문화재수리 실적·경력관리 제도 구축 및 국가자격시험 개선 시행
- ◎ 수리기술 유관기관 협력 및 활동 지원 강화 등 기술 진흥기반 구축

❖ 사업개요

- ◎ 소요예산 : 17.3억 원(국비 17.3억)
- ◎ 사업내용 : 수리 실적·경력관리, 시험 제도 개선, 유관 기관 협력 강화 등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시행을 통해 근본적 수리 기술 진흥 기반 구축
- (사)문화재수리협회에 실적 및 경력 관리 업무 위탁 실시 및 지원
- 수리 기술 진흥 기반이 되는 우수한 수리기술자 확보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개선 추진
 - 고도화된 전문성 반영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개선 용역 실시
 - 국가자격시험 개선 방안 마련에 따른 법제화 추진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일은 비성수기에 시행 개선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회 연구 지원 실시 및 확대
- 수리 기술 진흥 기반이 되는 우수 수리기능자 확보를 위한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및 개별 작품전 출품 지원 강화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 추진방향

- ◎ 직접적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문화재 의무 감리 확대 및 직영사업 실시
- ◎ 수리현장 점검 및 현장 공개 확대 등으로 수리 품질 제고 도모

❖ 사업개요

- ◎ 소요예산 : 390억 원(국비 333억, 지방비 57억)
- ◎ 사업내용 : 감리 확대 및 직영사업 실시, 현장점검 및 현장 공개 등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및 감리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고도의 수리 품질 확보
 - 감리 실효성 제고 위해 수리 예정 금액 개정을 통한 대상 확대
(현 수리 예정금액 5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원 자격을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 경력자로 강화
- 최고 수준의 수리 품질 확보를 위해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직접사업 실시
- 문화재수리 품질 고도화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 개선
 - 수리 현장점검 시 감리점검 포함 확대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현장점검 확대 실시
- 국제적 수준의 문화재수리 품질 확보 및 확산을 위해 직접사업 등 중요 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관람 실시 확대
 - 가설덧집 및 현장 가림막 등 현장 시설물 개선 확대 권장 유도
 - 현장 공개 시 수리기능자의 전통수리기법현장 시연 권장 유도
(목재·석재·철물 가공 및 단청 시채 등)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 문화재수리 품질의 기반을 이루는 전통재료 및 전통도구 사용 활성화
- ◎ 국제교류 협력 및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등 수리 품질 기반 강화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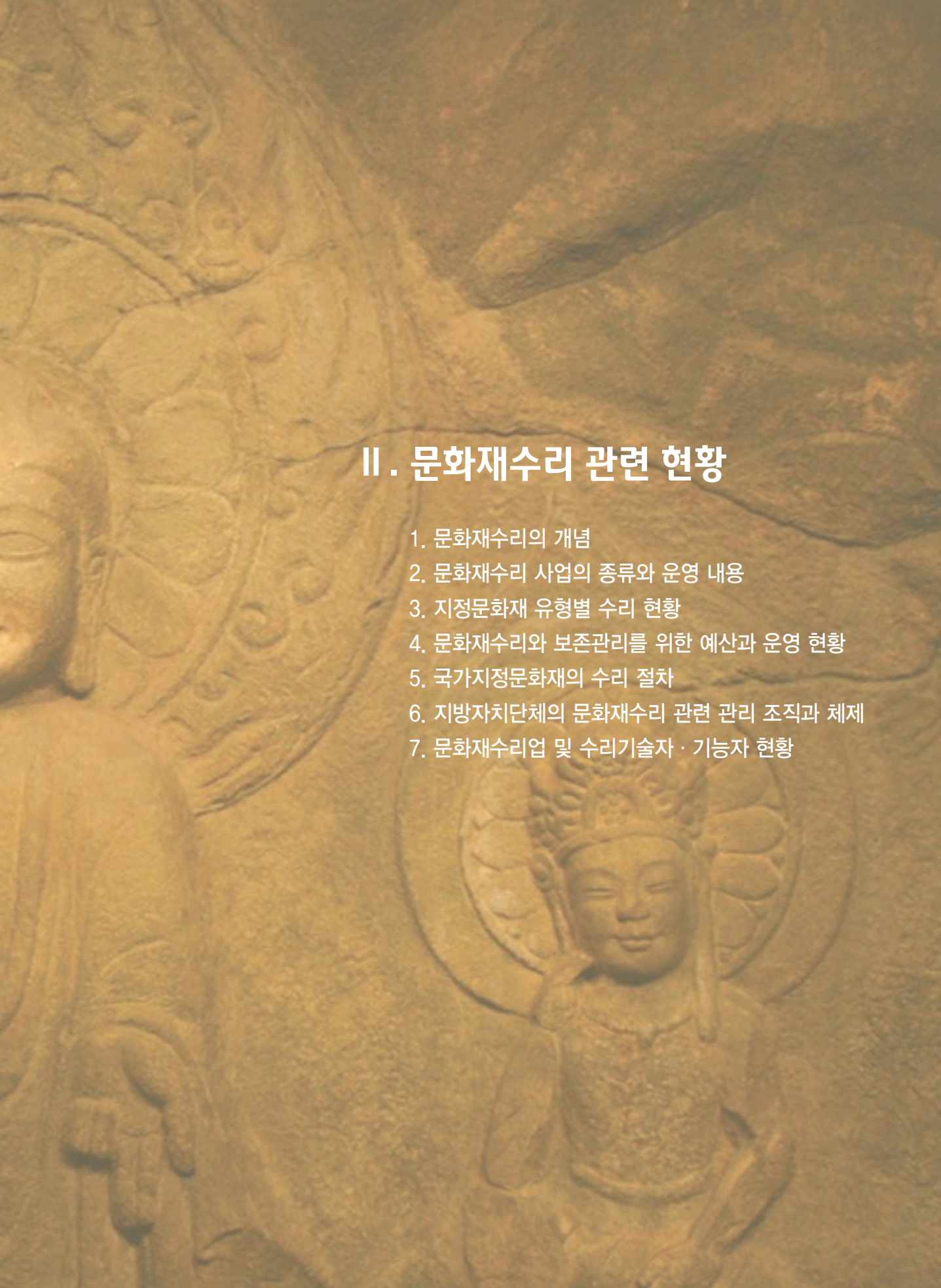
- ◎ 소요예산 : 61.8억 원(국비 61.8억)
- ◎ 사업내용 : 전통재료 · 전통도구 활성화, 국제교류, 수리이력 구축 등

- **전통재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 문화재청 직접사업(궁능원 보수정비 등) 추진 시 전통재료 사용 확대 및 중요 문화재수리 시 전통재료 사용 권장 유도
 - 전통재료의 특성 규명 연구를 통한 지역별, 시대별, 종류별 특성 및 분포 조사
 - 전통안료 · 벚짚 · 철물 · 미장재 등 재료 품질기준 순차 제정
 - 시방서 · 품셈 · 수리지침 등 전통재료별 순차 정비
- **재료별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및 지역별 특성 분석을 위해 목재 · 석재 · 미장재 · 온돌 · 한지 등 **수급방안 연구용역** 실시
- 전통재료의 체계적 조사 및 데이터화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전통기법 계승의 주요 요소인 전통도구 사용 확대**를 통해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 직접사업 등 중요 문화재 수리 시 전통도구 시연 공개 확대
 - 방문객 대상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통도구 시연 권장 유도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적극 활용
- 해외 문화재 수리기법 정보 공유를 통한 선진적 수리 품질 구축을 위한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14~'16) 후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추진**을 통한 선진적 수리 품질 기반 강화







II. 문화재수리 관련 현황

1. 문화재수리의 개념
2. 문화재수리 사업의 종류와 운영 내용
3. 지정문화재 유형별 수리 현황
4. 문화재수리와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과 운영 현황
5.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절차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과 체제
7. 문화재수리업 및 수리기술자 · 기능자 현황

II. 문화재수리 관련 현황

●● 1. 문화재수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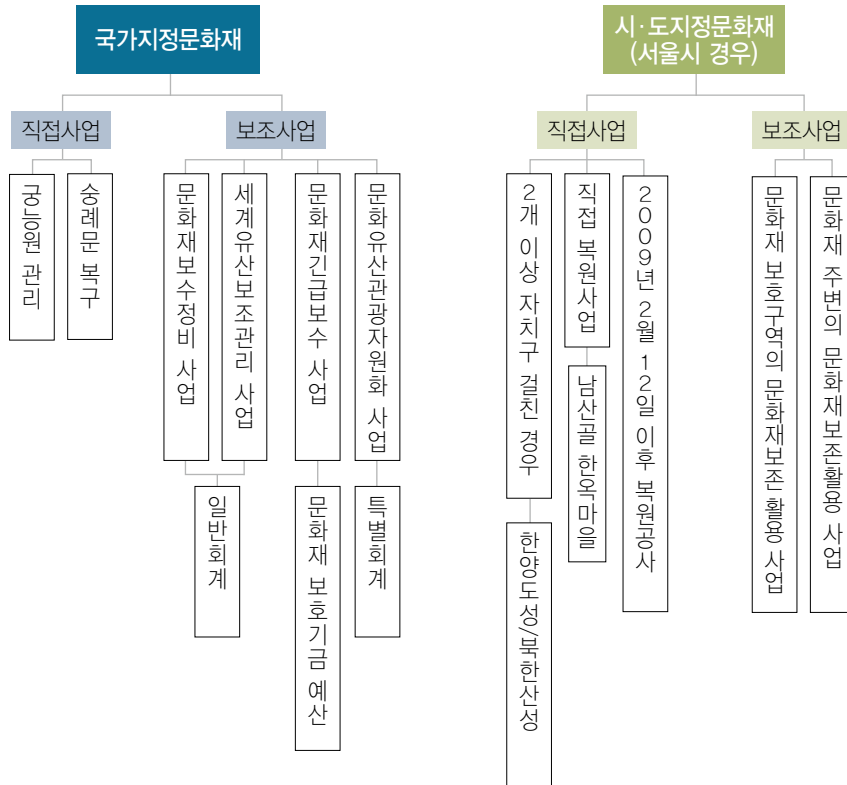
가. 법률상 문화재수리 개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정의와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수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때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품질향상 및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2010.2.4)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사항을 법체계상 최상위인 법률로 하여 독립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문화재 법률 체계를 잘 보여준다.

●● 2. 문화재수리 사업의 종류와 운영 내용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 사업

문화재수리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주체가 되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수리 사업을 감독하는데 직접사업과 보조사업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직접사업

- 직접사업은 수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발주하고 수리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사업이다.

- 직접사업의 예로는 궁·릉 복원정비 및 보수사업과 승례문 보수사업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궁·릉 복원정비 및 보수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화문 복원 사업을 들 수 있다.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업방식이다.
- 보조사업은 예산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문화재보호기금 예산, 특별회계 예산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에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이 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통상적인 보수사업이고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은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들 두 가지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 3의 비율로 보조금을 분담하게 된다.
-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긴급보수사업은 예견할 수 없는 재난, 재해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수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전담하여 시행 및 관리한다. 사업대상의 선정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되는 수리사업에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시행되는 문화유산관광자원화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특회계 사업이라고 약칭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지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게 된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부서의 현상변경 승인 및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문화재수리 사업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광역자치단체가 수리 사업을 감독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직접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 서울특별시의 문화재수리 사업

- 서울특별시의 문화재수리는 크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접사업과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재난·재해 시 긴급히 시행하는 긴급사업의 세 종류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 직접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개 시행한다.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인해 문화재 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대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행안부의 분권교부세도 받아 시행하기도 한다. 긴급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는 연간 4억 원 정도이다.

■ 강원도의 문화재수리 사업

- 강원도의 문화재수리 관련 사업은 지정유형별로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전통사찰로 구분된다. 또한 예산별로 보면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과 도예산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전통사찰의 수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은 도에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예산편성을 하여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수리사업을 관리 감독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때 예산은 분권교부세와 시군의 예산이 각각 5:5로 편성되며, 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도 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수리사업은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도에서 직접 수리사업을 관리 감독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시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다. 도에서 직접 수리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에는 도 예산만으로 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드문 예에 속하며, 현재까지 위봉문과 조양문 이전 사업(2012~2013년 사업) 외에는 사례가 없다. 도에서 자체 예

산을 편성하여 시군에 내려주는 경우는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5:5로 반영되며, 시군에서 수리사업을 관리 감독하여 진행한다.

3. 지정문화재 유형별 수리 현황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법적) 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리 건수 1,525건에 3천 7백억 6천 6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0년도 316건, 2001년도 250건, 2002년도 291건이었다. 문화재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적으로서 전체 1,525건 가운데 724건으로서 47.5%를 차지하고 있다.

2000~200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수리현황

(출처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문화재 전문법인설립 연구조사』, 2003)

(단위:백만 원)

구분	2000		2001		2002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보	26	6,299	19	5,790	17	2,904	62	14,993
보물	139	20,191	92	16,545	117	18,820	348	70,549
사적 및 명승	103	56,508	106	57,373	105	58,290	724	257,713
천연기념물	10	879	—	—	8	829	276	1,708
중요민속문화재	34	5,757	33	8,125	44	9,321	111	23,203
중요무형문화재	4	1,900	—	—	—	—	4	1,900
합계	316	91,534	250	87,833	291	90,164	1,525	370,066

국보는 2000년, 2001년, 2002년으로 갈수록 점차 건수와 예산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보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139건으로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했다가 2001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사적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정한

건수와 일정한 금액으로 100건 정도가 꾸준히 시행되어 왔고 집행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천연기념물은 2000년도 10건의 수리 후 2001년에는 공사가 없다가 2002년에 8건의 공사를 시행했다. 중요민속자료의 건수는 소수의 증감 대비 예산이 2001년 크게 증가한다. 중요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2000년에 4건의 수리 기록이 있지만 2001년과 2002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과 더불어 사용 금액도 증가했다. 다만 2008년 국보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수리 건수는 축소되었으나 금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보수정비사업, 천연기념물 제 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법적) 수리현황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11)

구분	2007		2008		2009		2010		건수 비율 (2010년)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국보	29	10,375,429	26	10,866,103	38	11,940,714	36	13,842,857	5.7%
보물	127	25,978,971	127	26,747,972	181	59,973,280	207	60,346,000	32.8%
사적 및 명승	195	150,602,253	178	127,250,747	172	123,586,286	241	136,218,547	38.1%
천연기념물 및 명승	134	26,002,627	132	27,519,517	148	37,892,165	114	38,212,008	18.0%
중요민속문화재	30	4,184,285	32	4,259,658	49	7,340,799	34	10,744,000	5.4%
전통 민속 마을	-	6,107,142	-	10,356,857	-	12,820,855	-	13,757,143	-
합계	515	223,250,707	495	207,000,854	588	253,554,099	632	273,120,555	100%

2010년 종류별 수리공사 시행 건수를 백분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사적과 보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중요민속자료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적은 정비 내용의 대부분이 토지 매입으로 나타나 다른 지정문화재에 비해 투입되는 재원이 높다.

2000년도 초반과 후반의 지정문화재 수리 현황을 살펴보면, 후기에 전체적으로 수리 건수나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316건과 2010년도

623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2배가 증가했고 예산은 약 3배로 증가하여 1,678억 원의 차를 보인다. 10년 사이에 문화재에 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수리 관련 사업과 예산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 관리 예산 재정지출 규모

(2011.12.31. 문화재청 발간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단위:억 원, %)

연도	정부		문화관광분야			문화재청			
	재정지출 규모	전년 대비	재정지출 규모	전년 대비	점유율 (정부)	재정지출 규모	전년 대비	점유율 (정부)	점유율 (문화부)
'04	1,969,410	26.5	24,464	—	1.24	3,609	3.5	0.18	14.7
'05	2,095,980	6.4	27,227	11.3	1.30	3,580	-2.4	0.17	13.1
'06	2,347,066	12.0	29,189	7.2	1.24	3,867	8.2	0.16	13.2
'07	2,337,186	-0.4	28,619	-2.0	1.22	4,157	8.0	0.18	14.5
'08	2,571,657	10.0	32,580	13.8	1.27	4,348	7.2	0.17	13.3
'09(본예산)	2,845,339	10.6	34,753	6.6	1.22	4,625	6.4	0.16	13.3
'09(추경)	3,017,526	6.0	35,526	2.2	1.18	5,006	8.2	0.17	14.1
'10	2,928,159	-3.0	38,990	9.8	1.33	5,212	5.8	0.18	13.4
'11	3,090,567	5.5	42,045	7.8	1.36	5,228	0.3	0.17	12.4
'12	3,254,076	5.3	45,757	8.8	1.41	5,577	6.7	0.17	12.2

그러나 문화재 관련 예산을 정부의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문화재 관련 예산은 증가율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12월 31일에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주요업무 통계자료집』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예산은 2005년의 감소를 제외하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문화재청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19%로 정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89%와 문화관광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8%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 예산 대비 점유율은

0.16~0.18%(평균 0.17%)로 연도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문화관광분야 예산 대비 점유율은 12.2~14.7%(평균 13.42%)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문화재청 예산의 증가율이 정부와 문화관광 분야 예산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4. 문화재수리와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과 운영 현황

가. 문화재 보존관리 재정 성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예산의 3조 4,705억 대비 67.6%인 2조 3,471억 원의 총 예산액을 소요하였다. 연도별로는 소요 예산이 증가하다가 협력적 관리 정책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사용액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핵심역량 강화 정책 세부 내용은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향상,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 문화재 행정역량 확충을 담고 있으며, 문화재 조사 연구 품질향상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의 가장 취약점인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타 사업에 비해 소요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소요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합리적 보존 정책 세부 내용은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개선·정비,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고도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담고 있다. 유형별 보존관리의 특성화와 고도화 부분이 가장 높은 예산을 차지했으며 그에 비해 시스템 개선·정비 부분은 미비하다.

협력적 관리 정착 정책의 세부 내용은 민·관의 협력 내실화, 국제 교류협력 강화, 남북 협력 안정화이다. 이 중 국제 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 협력 안정화 부분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관 협력 활성화는 문화재 보존 관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아직 취약하다. 하지만 점차 소요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재정 성과 평가표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안) 2012~2016』, 2011) (단위:억 원)

정책과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반영률 (%)
	계획	예산	계획	예산	계획	예산	계획	예산	계획	예산	계획	예산	
핵심역량 강화	378.0	443.2	639.0	485.9	674.5	403.6	473.5	396.3	525.0	379.7	2,690.0	2,108.8	78.4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향상	240.0	228.7	313.0	302.0	357.0	196.4	235.0	188.0	258.0	178.1	1,403.0	1,093.2	77.9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28.0	113.4	119.0	88.0	118.5	87.9	66.5	100.7	68.0	99.7	400.0	489.7	122.4
문화재 행정 역량 확충	110.0	101.1	207.0	95.9	198.0	119.3	172.0	107.7	200.0	101.9	887.0	525.9	59.3
합리적 보존	3,129.7	2,794.7	4,483.7	3,134	4,995	3,827.3	5,489.3	3,408.2	5,290.3	3,018.3	23,388	16,182.6	69.2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개선·정비	115.7	30.9	139.7	231.1	141.0	708.4	132.3	282.5	132.3	287.5	661.0	1,540.4	233.0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고도화	2,368.0	1,685.2	3,574.0	1,841.5	4,034.0	2,058.0	4,516.0	2,038.9	4,311.0	1,836.9	18,803.0	9,460.4	50.3
개발과 보존의 조화	646.0	1078.6	770.0	1061.4	820.0	1060.9	841.0	1086.8	847.0	893.9	3,924.0	5,181.8	132.1
협력적 관리정책	85.0	76.4	100	51.6	122	44.9	131	71.3	135	307.2	573	843.9	96.2
민·관 협력 내실화	36.0	34.2	39.0	9.2	40.0	8.3	40.0	28.8	41.0	28.8	196.0	109.3	55.8
국제 교류협력 강화	40.0	32.9	45.0	36.5	66.0	30.5	64.0	36.6	69.0	273.1	284.0	409.6	144.2
남북 협력 안정화	9.0	9.3	16.0	5.9	16.0	6.1	27.0	5.9	25.0	5.3	93.0	325	35.0
가치활용 활성화	1,237.2	697.7	1,787.9	838.3	2,011	1,111	1,786	1,061.8	1,231.9	949.4	8,054	4,628.2	57.5
현대적 가치 재창출	1,131.0	598.8	1,391.0	663.9	1,525.0	925.5	1,296.0	772.8	643.0	668.6	5,986.0	3,629.6	60.6
국민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88.2	81.1	366.9	150.2	451.0	153.4	448.0	255.4	543.9	246.6	1,898.0	856.7	45.1
교육 및 홍보강화	18.0	17.8	30.0	24.2	35.0	32.1	42.0	33.6	45.0	34.2	170.0	141.9	83.4
총 사업비	4,826.0	4,012.2	7,009.0	4,509.8	7,804.0	5,386.7	7,880.0	4,907.7	7,186.0	4,654.6	34,705.0	23,471.0	67.6

가치 활용 활성화 정책의 세부내용은 현대적 가치의 재창출, 국민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이며, 전체 사업 중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현대적 가치의 재창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 강화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 문화재수리사업 예산

2011년 정부의 총 지출 예산은 309조 1,000억 원인데 반해 2012년 총지출 예산안은 324조 4000억 원으로 16조 4000억 원이 증가하여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분야의 예산 비율은 총 예산에 비하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총지출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과 관련한 예산의 비율은 작년과 올해 모두 비슷한 수치로 총 약 0.45%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2011년 예산 총지출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 지출은 30억 50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부분 중 가장 낮은 0.0009%의 비율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지출은 1,262,192백만 원, 0.4%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부분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소관 일반 지출은 445,928백만 원인 0.14%로 방송통신위원회보다는 높고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예산의 절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 지출은 2,847백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03백만 원, 6.7%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지출은 1,366,289 백만 원으로 2011년 대비 104,097백만 원, 8.2% 증가하였다. 문화재청 소관 일반지출은 460,305백만 원으로 2011년 14,377백만 원, 3.2%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실 배분에서는 2011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문화재청 소관 일반 지출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1년도와 비교해 2012년도는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행정지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회계기금간 거래를 제외하고 문화유산 교육연구, 궁·능원 관리, 문화재 활용 부분에서는 그 예산이 감소하였다. 문화재청 소관 일반 지출 사업비는 대부분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절반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간 사이에 6,695백만 원 증가하였지만 사업간 비율에 큰 변화는 없다.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출처 : 20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단위:백만 원)

구 분		'11예산(A)	'12예산안(B)	증감(B-A)	증감율(%)
정부 총 지출 예산		309,100,000	325,400,000	16,400,000	5.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 지출		3,050[0.0009%]	2,847[0.0008%]	△203	△6.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 지출		1,262,192[0.4%]	1,366,289[0.4%]	104,097	8.2
문화재청 소관 일반 지출		445,928[0.14%]	460,305[0.14%]	14,377	3.2
사업비	●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5,242	8,460	3,218	61.4
	● 문화유산교육연구	18,521	13,645	△4,876	△26.3
	● 문화재 보존관리	226,895	233,590	6,695	3.0
	● 궁능원 관리	47,698	42,904	△4,794	△10.1
	● 문화재 국제교류	26,996	40,567	13,571	50.3
	● 문화재 활용	20,751	20,461	△290	△1.4
	● 문화재 행정지원	6,957	7,366	409	5.9
	소 계	2,033,472	2,165,760	13,933	3.9
● 인건비 및 기본경비		55,720	56,164	444	0.8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37,148	37,148	—	—

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연도별 소요예산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향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한 총 예산은 10,758.8억 원이다. 국비가 총 7,806.4억 원, 지방비가 총 2,434억 원으로 국비의 비중이 높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연도별 소요예산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안) 2012~2016』, 2011) (단위:억 원)

사업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문화재보수 품질향상	국 비	8.5	9.3	9.6	9.3	9.6	46.3
	지방비	—	—	—	—	—	—
	소 계	8.5	9.3	9.6	9.3	9.6	46.3
건조물문화재 항구적 보존	국 비	322.6	324.5	430.6	431.1	419.2	1,928
	지방비	128.6	128.6	135.0	135.0	138.0	665.2
	소 계	451.2	453.1	565.6	566.1	557.2	2,593.2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	국 비	98.7	130.5	176.5	176.5	206.5	788.7
	지방비	61.4	81.6	102.9	102.9	120.9	469.7
	소 계	160.1	212.1	279.4	279.4	327.4	1,258.4
자연유산 보존기반확대	국 비	328.8	334.4	333.2	361.8	410.4	1,768.6
	지방비	135.0	137.5	137.8	144.2	163.6	718.1
	기 금	5.3	6.3	6.3	6.3	7.3	31.5
	소 계	469.1	478.2	477.3	512.3	581.3	2,518.2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존 기반 강화	국 비	175.1	236.0	276.1	299.2	321.8	1,308.2
	지방비	27.5	30.3	33.3	36.6	40.3	168
	기 금	208.1	176.2	34.2	34.2	34.2	486.9
	소 계	410.7	442.5	343.6	370	396.3	1,963.1
민속문화재와 민속마을 보존·활용	국 비	25.6	23.6	24.6	25.7	26.7	366.5
	지방비	2.5	2.5	2.5	2.5	2.5	12.5
	소 계	28.1	26.1	27.1	28.2	269.5	379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대	국 비	84.1	92.5	108.3	121.6	116.7	523.2
	지방비	70.0	71.5	82.5	88.0	88.0	400
	소 계	154.1	164	190.8	209.6	204.7	923.2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	국 비	160.2	306.1	282.8	283.1	285.0	1,317.2
	지방비	1.6	—	—	—	—	1.6
	소 계	161.8	306.1	282.8	283.1	285	1,318.8
총 사업비	국 비	1,203.6	1,456.9	1,641.7	1,708.2	1,796.0	7,806.4
	지방비	426.6	452.0	493.9	509.2	552.3	2,434
	기 금	213.4	182.5	40.5	40.5	41.5	518.4
	총 계	1,843.6	2,091.4	2,176.1	2,257.9	2,389.8	10,758.8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사업비 규모는 건조물문화재 항구적 보존 사업이 총 2,593.2억 원으로 가장 크고, 자연유산 보존기반확대 사업에 2,518.2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보존기반 강화 사업에 1,963.1억 원,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에 1,318.8억 원,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에 1,258.4억 원,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대에 923.2억 원, 민속문화재와 민속마을 보존·활용에 379억 원, 문화재보수 품질향상에 46.3억 원 순으로 책정되어 있다.

국비 부담의 규모 역시 건조물문화재 항구적 보존 사업에 1,9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유산 보존기반확대 사업에 1,768.6억 원의 순으로 높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에서 세 번째 규모였던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존기반 강화 사업의 국비가 1,308.2억 원으로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가 1,317.2억 원보다 다소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존기반 강화 사업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비의 규모로 보면 ①자연유산 보존기반 확대에 718.1억 원, ②건조물문화재 항구적 보존에 665.2억 원, ③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에 469.7억 원, ④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대에 400억 원, ⑤무형문화유산 전승·보존기반 강화에 168억 원, ⑥민속문화재와 민속마을 보존·활용에 12.5억 원, ⑦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에 1.6억 원 순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비교하면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대> 사업의 경우는 지방비와 국비가 금액상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어서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이다.¹⁾ <동산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비가 국비의 1/2 정도로 타 사업에 비하면 지방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문화재보수 품질향상,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 사업에는 지방비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있다.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 사업에는 2012년 지방비가 1.6억 원을 계획하고 이후에는 책정된 예산이 없다. 이는 문화재청이 직접 실시하는 국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1)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7:3이고, 등록문화재의 경우 5:5로서 근대문화유산에 사적 등 지정문화재 외에도 등록문화재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라. 문화재보수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 및 운영현황

■ 문화재수리 기준 제정

문화재수리 기준 제정 사업의 목표는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 인력수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관련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7년 동안 총 3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수리사업에서 비합리적이었던 품셈 내용을 18개 공종 209개 항목으로 세부화하고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11년 11월 4일에는 13개 공종 100개 항목에 대하여 개정된 품셈을 관보에 고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100개 항목은 가설, 기초, 목공사,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단청, 유구정비, 보존처리, 기타공사, 총괄적용기준의 13개 공종 개정을 담고 있으며, 개정품셈 적용 시에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매점소 같은 주변 시설물을 정비할 때 목재 치목의 경우 인력과 기계치목을 구분·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품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까지 20.6억 원을 투입하여 남은 공종과 항목에 대한 작업까지 완료함으로써 전체 19개 공종 209항목 전체를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표를 발간하는 한편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은 2010년 2월 4일 제정하고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의무감리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범위 및 문화재 수리주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 홍보교육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모두 7회에 걸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6년까지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수리 기본 5개년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시공능력 평가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을 행하게 된다.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및 보급을 위해 문화재수리업 관리지침을 2011년 2월 1일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2011년 5월 26일에는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문화재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작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실시된 바 있다. 2012년~2016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해 문화재 실측설계 업무대가기준을 마련하고 2011년 연구 완료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대한 발간 작업과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준집을 발간하게 된다.

문화재수리 기준 제정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현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05~'11년	30.3	- 11개 공종 112개 항목을 18개 공종 209개 항목으로 개정 추진 - 우선 개정품셈 관보고서('11.4. 13개 공종 100개 항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	'10년 제정 '11년 시행	없음	- 문화재수리 등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의무감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범위 및 문화재 수리 주체확대 - 본 법률 홍보 교육 실시(7회 900명)
	문화재수리 기준제정·보급	'11.2~8	없음	- 문화재수리업 관리지침 제정 및 고시('11.2) - 문화재감리대가 기준 제정('11.5) -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작성 연구용역 ('11.4~'11.10)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제도 개선 연구용역	'11.4~'11.10	없음	-
	민간문화재수리 표 준도급계약서 제정	'11.8	없음	-
추진계획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상시 정비 및 보급	'12~'16년	20.6	- 19개 공종 209개 항목 전면개정 - 개정 문화재수리 표준품셈표 발간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 대상교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운영	'12~'16년	1.8	-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5개년 수립 - 문화재수리업의 시공능력 평가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 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해설 교육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및 보급	'12~'16년	4.5	- 문화재실측설계 업무대가기준 마련 -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발간, 문화재수리기준집 발간 등
	문화재수리 기술자격제도 운영	'12~'16년	2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관리 및 발급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경력제도 도입

한편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관리하고 발급하는 작업과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앞서 2011년 4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실시된 바 있는데, 2016년까지 2억의 예산을 더 투입하여 실제로 경력관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간문화재수리 표준 도급계약서가 2011년 8월 제정됨으로써 문화재수리를 위한 법률적 기틀이 계속해서 정비되어 가고 있다.

■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문화재 수리 기술진흥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단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유지 및 항구적 보존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건축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의 선진화를 도모함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국보·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는 2009년~2011년까지 1.7억 원을 투자해 설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2008년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이듬해 기술지도 확대를 시행하였다. 앞으로 2016년까지 연 24회 12.7억 원을 들여 전통기술(전통기와, 단청, 안료 등) 복원과 연계하여, 설계기간 단축, 고품질 관리, 전문 인력풀 관리 등을 목표로 기술지도를 계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문화재수리 기술진흥〉을 위한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사업으로서 2009년~2011년까지 총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일 교류 협력 사업 2회, 한·중 사전협의 1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2.6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한·일, 한·중 간의 5회에 걸친 국가 간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발전방향 마련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리기법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과 중국 이외에도 이탈리아 등의 문화재 사업에 선도적인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단위:억 원)

	사업내용	연도	예산	사업 세부내용
추진현황	국보·보물 등의 지정문화재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09~'11년	1.7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실적('09년 49건, '10년 이후 연 100여건) - 기술지도단 구성('08년 188명), 기술지도 확대 시행('09년 98건, '10년 이후 연 130여건)
	건축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추진	'09~'11년	2.3	- 한·일교류 협력(2회), 한·중 사전협의(1회)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활동 지원	'09~'11년	0.7	- 기능인 작품전 지원(격년제 실시) - 기능인 교육(3회)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06~'11년	0.4	- 매년 3회이상 100여건 내외 점검
	문화재수리공사(옹역사업) 시공평가 및 우수업자 지정	'06~'10년		- 6개업체(실측설계업 5개, 수리업체 1개)
추진계획	설계심사위원회의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12~'16년 (연24회)	12.7	- 전통기술(전통기와, 단청, 안료 등) 복원 연계 - 설계기간 단축, 고품질 관리, 전문인력풀제 관리 등
	건조물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추진	'12~'16년 (5회2개국)	2.6	- 한·일, 한·중간 교류협력 -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발전방향 마련 및 정보공유를 통한 수리기법 향상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활동 지원	'12~'16년	1.7	- 기능인 작품전 지원(3회 격년제) - 기능인 교육(매년 300명)
	문화재수리공사(옹역포함) 시공평가 및 우수업자 지정	'12~'16년		- 10개 업체(실측설계업 5개, 수리업체 5개)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12~'16년	0.4	-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2009년~2011까지 총 0.7억 원으로 기능인 작품전을 격년제로 실시하였고, 기능인 교육을 3회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16년까지 1.7억 원을 투자해 작품전을 여전히 지원할 계획이고 기능인 교육을 매년 확대 실시하여 약 300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현장점검은 2006년부터 실시하여 2011년까지 0.4억 원으로 매년 3회 이상 100여건 내외를 점검하는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시공평가 및 우수업자 지정 관련 사업은 2010년까지 실측업체 5개, 수리업체 1개를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2016년까지 총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같은 우수업자 선정은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쟁률을 높여 품질향상과 공사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건조물문화재 항구적 보존을 위한 예산 및 운영현황

■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의 기본방향은 관계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검토로 원형보존을 반영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건조물문화재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지정체계 정비 및 지정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유형별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정기조사를 통한 보존 및 보수·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07~'11년	1,782.7	- 서울문묘보수 등 575건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09~'10년	0.7	- 서울흥인지문 등 703건
추진 계획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12~'16년	2,365	- 서울 흥인지문 등 580건
	건조물문화재 목조, 석조 등 유형별 보존관리 체계(지침) 구축	'12~'16년	5	- 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12~'16년	5	- 국보·보물 705건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타 문화재보수 사업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보수정비 사업은 2007년~2011년까지 총 1,782.7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지정문화재·궁능원·문화권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576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6년까지 2,365억 원을 투자해 581건의 사업을 더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목조, 석조 등 유형별 보존관리 체계(지침)를 구상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사업은 2009년~2010년까지 총 0.7억 원을 들여 흥인지문을 포함한 703건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012년까지 5억 원을 투자하여 국보·보물 중심의 705건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기적인 조사와 수리공사 그리고 유지관리 연구도 함께 진행하여 손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조물문화재의 항구적 보존 관리를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건조물문화재 기록화

정밀실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D)을 통해 항구적 원형보존 및 훼손 시 수리·복원 자료로 활용하고, 정비·복원 등에 관한 상세내역을 기록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보물) 수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화 된 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국민들에게 학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조물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및 DB 구축	'07~'11년	36.3	정밀실측대상 총 153건(국보23건, 보물 130건) 중 132건 완료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07~'11년	2.6	국보·보물 보수·정비·복원('01~'08) 821건
추진 계획	중요목조문화재 정밀 실측 및 DB(3D) 구축	'12~'16년	75	보은 법주사 발상전 등 5건 신규추진 및 중요목조문화재 3D촬영 25건
	건조물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12~'16년	3	국보·보물 보수·정비·복원('09~'13) 920건

정보매체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실 가능성이 있는 건조물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3차원(3D)화 기록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및 DB구축 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6.3억 원이 투입되어 국보 23건, 보물 130건 중 132건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2016년 까지 75억 원이 더 투입되어 3차원 촬영 25건과 신규 건조물을 추가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사업>은 2007년부터 2.6억 원을 투입해 국보와 보물의 보수·정비·복원 사업 보고서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821건을 발간하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2016년까지 2009년~2013년 보수·정비·복원 공사 관련 보고서 920건을 3억 원을 투자해 계속해서 발간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건립

전통건축문화재의 해체보수 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부재임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보관되지 못하는 부재를 보존하고, 보존처리 기법 등 연구 성과에 대한 교육기능을 행하는 보존센터 건립은 시대별·유형별 건축의 변천 및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건립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건립	'10년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11년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부지 확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9,000평)
추진 계획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건립	'12~'13년	12	보존센터 설계 추진
		'14~'16년	278	보존센터 시설공사 및 개관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건립〉을 위해 2010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011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9,000평의 건립 대지를 확보하였다. 센터 건립은 앞으로 2012년~2013년까지 12억 원의 예산으로 보존센터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후 2014년~2016년까지 279억 원으로 보존센터 시설공사와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바. 중요민속문화재와 민속마을 보존 활용을 위한 예산 및 운영현황

■ 중요민속문화재 합리적 보존

중요민속문화재 관련 사업은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멸실·훼손에 대한 복원고증자료 확보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요민속문화재 합리적 보존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현황	중요민속문화재지정	'07~'11년	50.5	마을 및 가옥
	중요민속문화재(가옥) 지정명칭 변경	'07~'08년	-	- 안동 학암고택(179호) - 안동 오류현(184호) - 경주 양동마을(189호) 등 27건
	중요민속문화재(마을, 가옥) 보수정비	'07~'11년	410	- 민속마을(4개소, 242억 원) - 전통가옥(153개소, 168억 원)
	중요민속문화재 기록화사업	'07~'11년	12	마을 및 가옥
추진계획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보존·관리	'12년~계속	10	-
	전통가옥의 원형복원 및 고증자료 활용을 위한 실측 및 DB구축	'12년~계속	19	나주 남파고택(중민 제263호) 등 40건
	사전예방관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전통가옥 경상관리비 지원	'12년~계속	50	-
	민속마을 지정의 다양화 추진	'12년~계속	5	섬마을, 산촌마을, 어촌마을 등
	민속마을 마을장인 지정추진	'12년~계속	0.5	초가장, 담장장, 장승장, 음식장 등

중요민속문화재(마을·가옥) 지정 사업은 2007년~2011년까지 총 50.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계속해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존·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7년~2008년 동안에 시행한 <중요민속문화재(가옥) 지정명칭 변경사업>은 안동학암고택(중민 제175호), 안동 오류현(중민 제184호), 경주양동마을(중민 제189호) 등 27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결실을 낳았다.

중요민속문화재(마을, 가옥) 보수 정비 사업은 2007년~2011년 간 민속마을 4개소 242억 원, 전통가옥 153개소 168억 원으로 총 41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예방관리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전통가옥 경상관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요민속문화재 기록화사업은 2007년~2011까지 12억을 투자해 마을과 가옥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전통가옥의 원형복원 및 고증자료 활용을 위한 실측 및 DB구축 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19억의 예산으로 나주 남파고택(중민 제263호)을 비롯해 40건을 대상으로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2년부터 5억 원 예산으로 계획 중인 <민속마을 지정의 다양화 추진사업>은 기존의 전통마을과 가옥의 범주에서 벗어나 민속학적 가치가 있는 섬마을, 산촌마을, 어촌마을로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속마을의 마을 장인 지정 추진> 또한 2012년부터 0.5억 원의 초기 예산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요민속문화재 보존 사업은 현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첫발을 내딛고 있다. 기존의 마을과 다른 환경인 섬마을, 산촌마을, 어촌마을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마을장인의 지정을 어떤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또 다른 영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지정된 장인들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민속문화재는 계속해서 지정 및 다양화되고 있고, 그 양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 또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통가옥 활용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전통가옥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정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가옥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통가옥의 보전가치와 활용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과거의 단순 관람 차원에서 벗어나 체험 및 교육 등의 활용 영역으로의 확대에 따른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목표이다.

전통가옥 활용 활성화 지원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 황	5개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05~'07년	3.2	왕곡, 외암, 하회, 양동, 성읍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의 활용활성화 방안 마련	'11년	1.4	—
	전통가옥 생활 기본시설 설치기준 마련	'11년	0.2	—
	(사)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 협의회 정기부금단체 지정	'11년		—
추진 계 획	전통가옥 등 활용을 위한 문화전승 지원 사업 추진	'12~'16년	30	● 전통의례(전통혼례, 전통제례) 및 거주공간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 ● 전통가옥의 가승(家乘)음식 시식 및 시연회 개최 ● 전통가옥 대상 볼거리 및 소장유물 특별 전시회 개최
	전통가옥 등의 생활 기본시설 설치기준 마련 추진	'12~'16년		—
	전통가옥 주거문화사 등의 조사·연구 추진	'12~'16년		—

이 사업에 따라 왕곡마을, 외암마을, 하회마을, 양동마을, 성읍마을을 대상으로 <5개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였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후 2011년 1.4억의 예산으로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의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과 같은 실질적 활용 방안이 합쳐져 관광브랜드화를 시도하였다.

마을의 관광단지화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익과 의견수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마을 주민들의 편익과 민속마을의 가치보존을 위한 이견조율의 방안으로 2011년 <전통가옥 생활 기본시설 설치 기준 마련 사업>

을 진행 중이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에서는 <(사)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회의 지정기부단체 지정>을 2011년 시행하여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2012년~2016년 전통가옥 활성화 사업은 총 30억으로 <전통가옥 활용을 위한 문화전승 지원 사업>과 <전통가옥 등의 생활 기본시설 설치기준 마련 추진 사업>, <전통가옥 주거문화사 등의 조사·연구 추진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사. 근대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예산 및 운영현황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는 2011년 9월 30일 현재 총 476건으로, 대부분 건축 시설물에 해당하는데 업무시설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용시설 65건, 종교 시설 56건, 교육시설 41건, 주거숙박시설 36건, 전쟁관련시설과 산업시설이 각각 25건, 인물기념시설 22건, 의료시설 12건, 문화집회시설 7건, 상업시설 5건의 순이다. 이외에 동산으로 98건이 있고 기타 시설물로 17건이 있었다.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현황('11.9.30)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구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 숙박 시설	전쟁 관련 시설	문화 집회 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 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 시설	동산	기타 시설 물	계
건수	56	67	41	36	25	7	12	25	65	22	5	98	17	476

■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이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및 활용 추진이 목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예산 133억 원을 들여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 사업>을 시행하였고, 향후 22억 원의 기초예산으로 <문화재 등록신청에 따른 근대 문화유산 현지조사·등록추천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현황	근대문화유산조사·등록	'07~'11년	133	-
	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보수정비·기술지도	'07~'11년	331	- 서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 정비 및 전시관 개관('08~'10) -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등 정부수반유적 정비('07~'11년) - 등록문화재(종교건축물, 산업시설물 등 470건) 보수 정비
추진계획	근대문화유산 현지조사·등록	'12년~계속	22	- 문화재 등록신청에 따른 근대문화유산 현지 조사·등록추천
	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보수정비·기술지도	'12년~계속	760	- 사적 제 497호 이화장 등 350여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예산 331억 원을 들여 <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보수정비·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했고, 2008년~2010년까지 서대문형무소(사적 제 324호) 정비 및 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등 정부수반유적 정비 사업을 2007년~2011년까지 시행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종교건축물과 산업시설물 등 470건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760억 원을 투입하여 사적 제497호 이화장 등 350여건의 보수정비·기술지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근대건축물 기록화

이 사업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인 근대건축물의 기록 보존으로 문화재 훼손 시 원형 복원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록화 대상 문화재 실측자료, 해설자료, 사진 등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목표다.

<근대사적, 등록문화재 등 근대건축물을 실측, 사진촬영, DB구축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3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에는 서울 혜화동 성당 등 18건, 2008년은 최순우 옛집 등 19건, 2009년은 충청남도청 등 24건, 2010년은 구

공업전습소 본관 등 근대사적 2건과 등록문화재 8건, 2011년 전주 정동성당 등 근대사적 2건, 등록문화재 10건의 기록화 작업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이 사업은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총 38.5억 원으로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하여 약 80건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근대사적·등록문화재 등 근대건축물을 실측, 사진촬영, DB구축(83건)	'07~'11년	23.2	● 서울 해화동 성당 등 18건('07년) ● 최순우 옛집 등 19건('08년) ● 충청남도청 등 24건('09년) ● 구 공업전습소 본관 등 10건('10년, 사적 2건, 등록 8건) ● 전주 정동성당 등 12건('11년, 사적 2건, 등록 10건)
추진 계획	사적(근대건축)·등록문화재 기록화 80건 추진	'12~'16년	38.5	—

아.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송례문 복구를 위한 예산 및 운영현황

■ 경복궁 복원 정비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변형·훼손된 경복궁의 주요 전각 및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통해 법궁(法宮)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여 민족문화의 우수성 선양과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목표이다.

1990년부터 2010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해 경복궁 1차 복원 정비에서 구 조선 총독부 청사 등 네거티브 문화재 철거와 광화문 복원 및 훼손된 전각 89동의 복원을 마친 상태이고, 고종 중건 당시 전각의 25%를 복원했다. 이를 이어서 경복궁 2차 복원정비에서는 궁중생활권역 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단계 소주방권역 복원공사 18동과 2단계 궁중통치권역과 선원관청 등 20동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1,130.7억 원을 투입해 복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복궁 복원 정비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경복궁 1차 복원정비 완료	'90~'10년	300	● 구 조선총독부 청사 등 네거티브 문화재 철거 ● 광화문 복원 및 훼손된 전각 89동 복원 (고종 중건 당시 전각의 25% 복원)
추진 계획	경복궁 2차 복원정비 1단계 (궁중 생활권역) 사업추진	'12~'16년	1,130.7	● 소주방권역 복원공사(18동)
	경복궁 2차 사업 2단계 사업추진			● 궁중통치권역, 선원관청 등 20동

■ 덕수궁 복원정비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변형·훼손된 덕수궁 중화전·함녕전 일곽·석조전 등 주요 전각을 복원·정비하여 왜곡 및 단절된 역사를 회복하여 민족 문화의 우수성 선양과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덕수궁 복원정비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덕수궁 복원 정비	'07~'11년	144	● 대한문, 중명전, 함녕전, 준명당 등 4동 복원 및 정비 완료('04~'10년) ● 덕홍전 행각, 석조전 등 복원·정비 추진중 ('09~'13년)
추진 계획	덕수궁 복원 정비	'12~'16년	127.8	● 덕홍전, 즉조당, 준명당, 함녕전 행각 및 석어당, 광명문 등 복원 ● 석조전 복원완료 ● 아관파천길 복원

2004년~2010년까지 144억 원을 투입해 대한문, 중명전, 함녕전, 준명당 등 4동 복원 및 정비를 완료했고, 2009년~2013년까지 덕홍전 행각, 석조전 등 복원·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 127.8억 원의 예산으로 덕홍전, 즉조당,

준명당, 함녕전 행각 및 석어당, 광명문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석조전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관파천길 또한 복원할 예정이다.

■ 송례문 복구 및 주변정비

이 사업은 문헌, 고증 등을 토대로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 옛 모습대로 완벽하게 복구하여 국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2009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2011년까지 총 186억 원을 투입하여 〈송례문 복구 및 주변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예산은 송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을 위한 가설 덧집 설치에 47억 원, 문루 복구 및 성곽 복원에 107억 원을 사용했고, 송례문 전면 책임 감리용역에 9억 원, 송례문 복구설계 용역에 2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은 옛 방식대로 수리 공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전통기와 가마 복원, 육축구조 안정, 단청·기와·철물, 송례문 영상기록 등을 위한 고증조사 및 연구를 겸하여 사업비용 6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진행했다.

2012년 송례문 복구 마무리 및 연구 용역사업으로 총 60.3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53.6억 원의 예산으로 송례문 문루 기와잇기 및 단청, 방재시스템 설치, 주변정비 등의 송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의 마무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2.5억 원으로 영상기록물 제작 연구용역을 하며, 준공행사로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송례문 복구 및 주변 정비 현황 및 계획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 계획』, 2011)

	사업내용	연도	예산(억 원)	사업세부내용
추진 현황	송례문 복구 및 주변 정비	'09~'11년	154	송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가설덧집 설치(47억 원), 문루 복구 및 성곽 복원(107억 원))
		'09~'11년	9	송례문 전면책임 감리용역
		'09~'11년	2	송례문 복구 설계 용역
		'10~'11년	8.5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5천만 원), 설계 및 공사(8억 원)
		'09~'11년	6	송례문고증조사 및 연구(전통기와가마 복원, 육축 구조 안정, 단청·기와·철물, 송례문 영상기록 등)
추진 계획	송례문 복구 마무리 및 연구용역	'12년	53.6	송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문루 기와잇기 및 단청, 방재시스템 설치, 주변정비 등 마무리)
		'12년	2.5	영상기록물 제작 등 연구용역
		'12년	4.3	준공행사

●● 5.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절차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계획수립, 설계, 공사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그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계획수립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해당 문화재의 수리에 대한 범위를 파악하게 된다.²⁾ 지방자치단체는 파악된 내용을 5월까지 문화재청에 신청한다.

문화재청에 신청된 사항은 각 소관 과에서 공사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이 확정된다.³⁾

- 문화재 실태 파악 : 지방자치단체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신청 (5월경)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며, 수리 신청은 6~7월에 이루어짐
- 문화재청 자료 취합
- 소요 예산 산정
- 소관 과 심의 후 공사 내용 및 범위 확정
- 예산 확정

■ 2단계 : 설계

사업이 결정된 경우 조달청을 통해 발주가 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체는 응찰을 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하게 되고 착수계를 제출한 다음 사업 범위에 따라 실측설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 수행 중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자문을 거쳐 사업을 완성하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된 내용은 검수를 통해 필요하다면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다. 납품과 함께 완료계를 제출하면 설계와 관련된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 발주 및 응찰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결정
- 계약 및 착수계 제출
- 문화재실측설계업무 수행

2)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릉·고궁박물관 소장 문화재 등은 제외된다.

3)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예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리 신청을 받고 해당 연도에 수리를 할 것인지 여부와 공사 범위 및 예산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 승인 신청 및 검수
- 최종 결과물 납품
- 완료계 제출

■ 3단계 : 공사

설계를 통해 공사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고 공사 금액이 정해지면 다시 조달청에 의해 공사가 발주되고 문화재수리업체는 응찰을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문화재수리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한 다음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에 착수한다. 수리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자문과 보고를 거치게 되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실정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수리업체와 감리업체, 그리고 관리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충실한 수리공사를 수행한다. 문화재수리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리공사 완료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한다. 준공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업체는 수리공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주자는 이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수리공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정문화재)에게 제출한다.

- 발주 및 응찰
- 문화재수리업자 결정
-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 문화재수리 평가 (비활성)
- 문화재수리 완료
- 준공계 제출
- 문화재수리업자는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준공 후 60일 이내)
- 발주자는 보고서를 문화재청장(국가지정문화재)에게 제출 (30일 이내)⁴⁾

4)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과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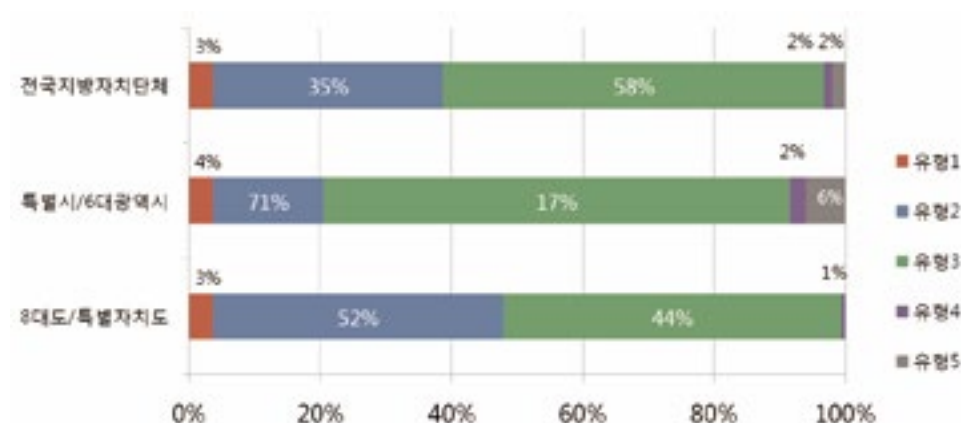
현재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16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30곳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을 현장 방문과 면담,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재 수리 관련 관리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이한 문화재 수리 관련 관리 조직을 크게 분류하면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과 체계의 유형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관리 관련 조직은 모두 2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유형1에 해당하는 ‘과’ 단위의 문화재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에 불과한 9개이다. 유형2에 해당하는 ‘계’ 단위의 문화재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7개이다. 유형3에 해당하는 주무관 위주의 문화재관리 조직은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14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유형4와 유형5에 해당하는 조직도 각각 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조직의 유형별 비율



전국 지자체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 분포 현황

(괄호 안의 숫자는 백분율 %)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계
8개도/특별자치도	6(3.6)	73(44.2)	85(51.5)	1(0.6)	0(0.0)	165
특별시/6대광역시	3(3.6)	14(16.9)	59(71.1)	2(2.4)	5(6.0)	83
계(지방자치단체)	9(3.6)	87(35.1)	144(58.1)	3(1.2)	5((2.0)	248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두드러진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 ‘과’ 단위의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 = 고도(古都) 지역

‘과’ 단위의 문화재관리 조직은 서울을 포함하여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9개의 문화재관리 조직 중 서울특별시 2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경주시 및 김해시 등 7개의 조직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옛 도읍인 고도(古都) 지역에 해당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에 비례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 구성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총 3,385개이다. 이들 국가지정문화재 중 25.5%에 해당하는 864개의 문화재가 서울특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17.7%에 해당하는 600개의 문화재가 경상북도에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문화재가 분포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부터 ‘과’ 단위의 문화재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문화재관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7. 문화재수리업 및 수리기술자 · 기능자 현황

가. 문화재수리업(보수 · 실측설계 · 감리) 현황

문화재수리 관련 업체의 유형은 크게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으로 나누어진다. 2013년 11월 30일 현재 총 423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이 중 문화재수리업체는 347개이며, 문화재실측설계업체가 57개, 그리고 문화재 감리업체가 19개이다.

347개의 문화재수리업체는 다시 종합문화재수리업체와 전문문화재수리업체로 나

누어진다. 이 중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체는 196개이며, 전문문화재수리업체는 151개이다. 전문문화재수리업체 151개는 다시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7개 전문 분야로 세분화된다. 조경업이 58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보존과학업체 43개, 식물보호업체 40개, 단청공사업체 5개, 석공사업체 4개, 번와공사업체 1개가 있으며, 목공사업체는 없다.

문화재수리업 등 지역별 등록현황

(2013년 11월 30일 기준)

(단위: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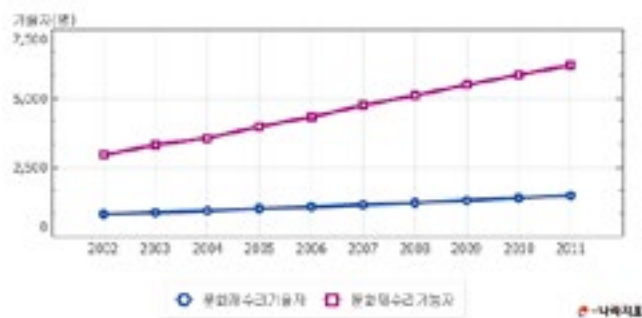
지역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계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서울	14	13	4	2	1	—	1	1	12	5	53
부산	—	—	—	2	—	—	—	—	—	—	2
대구	—	—	—	—	—	—	—	—	2	—	2
인천	2	—	—	—	—	—	—	—	—	—	2
광주	—	—	—	—	—	—	—	—	—	—	0
대전	—	1	—	—	—	—	—	—	—	—	1
울산	—	—	—	—	—	—	—	—	—	—	0
세종	—	2	—	—	—	—	—	—	—	—	2
경기	17	8	4	1	1	—	1	—	7	1	40
강원	8	—	4	4	—	—	—	—	2	—	18
충북	12	1	4	1	—	—	1	—	3	—	22
충남	21	12	4	3	—	—	1	—	4	1	46
전북	16	2	3	2	—	—	—	—	3	2	28
전남	21	6	8	7	2	—	—	—	6	4	54
경북	49	6	9	6	—	—	—	—	13	4	87
경남	29	1	1	5	1	—	—	—	5	2	44
제주	7	6	2	7	—	—	—	—	—	—	22
합계	196	58	43	40	5	0	4	1	57	19	423

문화재수리업체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이 8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이 54개, 서울이 53개, 충남이 46개이다. 경남 44개, 경기 40개, 전북 28개, 그리고 충북과 제주가 각각 22개이다.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인천 및 대구가 2개이고, 대전은 1개이며, 광주와 울산에는 문화수리업체가 없다.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현황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의 집중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이 197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3년과 1976년을 제외하고 매년 1회씩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 배출된 누적 인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1,542명, 문화재수리기능자가 6,605명에 이른다.

연도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누적인원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누적인원 및 증감률

(단위:명)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문화재 수리 기술자	누적인원	788	851	920	993	1,053	1,134	1,206	1,289	1,383	1,463	1,542
	증가인원	－	63	69	73	60	81	72	83	94	80	79
	연평균 증가인원	69.2					81.5					
문화재 수리 기능자	인원	2,936	3,298	3,557	3,962	4,320	4,736	5,100	5,478	5,860	6,195	6,605
	증가인원	－	362	259	405	358	416	364	378	382	335	410
	연평균 증가인원	360.0					380.8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2007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자격시험 통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행하였던 2007년까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연평균 증가인원은 69.2명,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연평균 증가인원은 360.0명이었다. 반면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된 2008년 이후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연평균 증가인원은 81.5명,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연평균 증가인원은 380.8명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이전에 비해 연평균 증가인원이 12.3명(17.8%)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연평균 증가인원이 360명에서 380.8명으로 20.8명(5.8%) 증가하였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기술자를 비롯하여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등 6개 분야가 있다.

한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개 분야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시공뿐 아니라 감리가 추가되었다.

2012년 12월까지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총 1,542명이다. 이 중에서 보수 분야가 59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청 분야가 491명이며, 조경 분야 213명, 보존과학 분야 103명, 실측설계 분야 77명이고, 식물보호 분야가 65명으로 가장

적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보수기술자 등록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보수가 4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청 93명, 보존과학 68명, 조경 70명, 식물보호 분야 30명, 실측설계 24명 순이다. 보수와 단청이 가장 많으며, 실측설계 분야는 기존에 가장 적었으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현황

(단위:명)

연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누계
'71~'99	298	193	47	79	12	9	638	638
2000	26	20	4	12	1	—	63	701
2001	10	22	—	1	—	—	33	734
2002	19	28	1	3	1	2	54	788
2003	30	22	—	6	—	5	63	851
2004	29	23	—	11	3	3	69	920
2005	16	31	1	13	6	6	73	993
2006	13	24	—	10	6	7	60	1,053
2007	26	35	3	8	6	3	81	1,134
2008	17	20	3	14	15	3	72	1,206
2009	26	23	3	9	15	7	83	1,289
2010	29	22	5	18	14	6	94	1,383
2011	24	16	5	14	12	9	80	1,463
2012	30	12	5	15	12	5	79	1,542
계	593	491	77	213	103	65	1,542	—

2008~2012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현황

(단위:명)

연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분야	계	누계
2008	17	20	3	14	15	3	72	1,206
2009	26	23	3	9	15	7	83	1,289
2010	29	22	5	18	14	6	94	1,383
2011	24	16	5	14	12	9	80	1,463
2012	30	12	5	15	12	5	79	1,542
계	126	93	21	70	68	30	329	—

문화재수리기능자는 2012년 12월까지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본 제작공 등의 분야에서 모두 6,605명이 등록되어 있다. 2012년에는 410명이 신규로 등록하였는데, 대목수 71명, 소목수 10명, 가공석공 21명, 쌓기석공 26명, 화공 21명, 드잡이공 2명, 번와와공 16명, 제작와공 1명, 한식미장공 10명, 철물공 2명, 목조각공 3명, 석조각공 6명, 칠공 33명, 도금공 6명, 표구공 5명, 조경공 19명, 세척공 22명, 훈증공 3명, 보존처리공 57명, 식물보호공 9명, 실측설계사보 66명, 박제 및 표본 제작공 1명이었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단체 현황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문화재 보존수리기능의 전승개발, 문화재 애호사상 양양, 회원 자질 향상과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88년 8월 18일 설립되었다. 국내·외 문화재를 탐방하고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을 개최하며, 문화재보존수리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책을 건의하는 등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술교양지 <문화재기능의 맥>을 2011년 2월까지 10호 발간하였다. 회원 가입 자

격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합격한 기능인에 한하고 일정액의 연회비를 받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1988년 9월 21일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결속과 문화재수리 또는 학술, 기술, 전문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계로 문화재 보존 기술의 개선 향상을 추구하며 문화재 원형을 유지 계승케 함을 목적으로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로 창립하였다. 1998년 3월 14일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9년부터 매년 문화재수리기술 강좌와 국내·외 고건축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건축문화재를 조사하고 답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판 사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애호 사상 고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1991년 11월 9일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제반 학술적 연구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년에 두 번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인 <보존과학회지>를 매년 4회 발행하고 있다. 조직은 매장문화재 분과, 석조문화재 분과, 목재문화재 분과, 벽화회화지류문화재 분과, 문화재분석 분과, 문화재환경 분과, 근대문화재 분과 등 7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협회

2011년 2월 5일에 시행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2011년 9월 23일 창립된 사단법인이다. 문화재수리기술 향상과 수리품질 제고, 문화재수리 시공실적 관리 및 종사자 경력 관리, 문화재수리 관련 연구 및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재수리협회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 ②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 ③ 문화재수리에 관한 조사통계와 각종 정보의 수집과 개발 보급
- ④ 문화재수리기술 학술대회와 세미나 개최 및 문화재 원형 보존과 기술 향상에 관한 연구 및 보급
- ⑤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지도 및 안내
- ⑥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
- ⑦ 문화재수리업 관련 공제 업무
- ⑧ 문화재수리공사 관련 시공실적 및 종사자 경력 관리
- 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 ⑪ 회원 및 그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 ⑫ 문화재수리 관련단체에 대한 보조지원
- ⑬ 기타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Ⅲ. 문화재수리 환경 진단

1. 문화재수리 관련 인식도
2. 문화재수리 현황 분석
3. SWOT 분석
4. 종합 분석 및 정책 방향

Ⅲ. 문화재수리 환경 진단

●● 1. 문화재수리 관련 인식도⁵⁾

수리 기반 정책에 대한 만족도

- 문화재수리 기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2.98점(5점 평균)으로 보통 수준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3.3점,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2.66점으로 응답 대상에 따라 인식 차이 나타남

내용 \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리업 및 실측설계업 종사자
수리법에서 수리 기반 정책 적절성	평균값 : 3.30 (응답자 : 174명)	평균값 : 2.66 (응답자 : 95명)

수리품질과 기술향상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 수리품질과 기술향상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2.87점(5점 평균)으로 낮은 수준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3.22점,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2.52점으로 응답 대상에 따라 인식 차이 나타남

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2

내용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리업 및 실측설계업 종사자
수리법에서 수리품질과 기술향상 적절성		평균값 : 3.22 (응답자 : 174명)	평균값 : 2.52 (응답자 : 95명)

문화재 수리품질에 대한 만족도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3.5점(5점 평균)으로 높은 수준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3.53점,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3.46점으로 응답 대상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2.99점(5점 평균)으로 보통 수준임
 - 지자체(광역시 및 시군구) 공무원은 3.33점, 국가 공무원은 2.61,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2.89점으로 응답 대상에 따라 인식 차이 나타남
- 비지정문화재 수리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2.64점(5점 평균)으로 낮은 수준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2.73점,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2.54점으로 응답 대상 모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내용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리업 및 실측설계업 종사자
국가지정문화재 수리품질의 만족도		평균값 : 3.53 (응답자 : 169명)	평균값 : 3.46 (응답자 : 94명)
시도지정문화재 수리품질의 만족도		평균값 : 3.09 (응답자 : 172명)	평균값 : 2.89 (응답자 : 95명)
비지정문화재 수리품질의 만족도		평균값 : 2.73 (응답자 : 165명)	평균값 : 2.54 (응답자 : 94명)

수리 관련 법령에서 수리업 진흥에 대한 만족도

- 수리 관련 법령에서 수리업 진흥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2.73점(5점 평균)으로 낮은 수준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3.16점,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2.29점으로 응답 대상에 따라 인식 차이 나타남

내용 \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리업 및 실측설계업 종사자
수리법에서 수리업 보호 등 진흥의 적절성	평균값 : 3.16 (응답자 : 174명)	평균값 : 2.29 (응답자 : 94명)

문화재수리 전문가 양성과 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

- 문화재수리 전문가 양성과 교육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2.6점(5점 평균)으로 낮은 수준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2.97점, 수리업 종사자(실측설계업 포함)는 2.22점으로 응답 대상 모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내용 \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리업 및 실측설계업 종사자
수리법에서 전문가 양성 및 교육방안 적절성	평균값 : 2.97 (응답자 : 172명)	평균값 : 2.22 (응답자 : 95명)

●● 2. 문화재수리 현황 분석

■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필요

- 문화재수리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관리 및 등급제 도입, 수리업체 실적관리 도입, 자격시험제도 개선, 다양한 전문 기술 분야 마련 등
- 문화재수리 관련 취약한 행정조직의 체계적 강화 필요
 - 문화재수리 전담 법인 설립 등

■ 문화재수리 환경 기반 구축 필요

- 지정 확대 및 노후화에 따른 수리 대상 문화재의 지속적 증가와 문화재수리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리 기반 확충 필요
 - 예산 확보 등
- 취약한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 축적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전통부재보관창고 건립 등
- 문화재수리 관련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수립 필요
 - 지자체, 학(협)회, 기술자·기능자 등 참여 워크숍 개최 등
- 현행 문화재수리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업 포함) 종사자의 낮은 만족도
 - 수리예산 문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관리 주체 이원화 등

■ 문화재수리 품질 및 기술 향상 기반 구축 필요

- 전통적 기술 점차 소실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 축적 필요
 - 문화재수리 관련 DB 센터 구축 등
-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재료·공법 연구 기관 부재
 - 문화재수리 기술진흥을 위한 법인 설립 등
-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재수리 품질 바탕이 되는 문화재수리 전문가의 개별적 능력 차이 해소 필요
 - 문화재감리 확대, 수리기술자 의무교육 실시 등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문화재수리를 위한 각종 자재(목재, 석재, 흙, 기와 등) 수급 환경의 악화

- 전통재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만을 담당하는 현행 체계로 인한 시·도지정 문화재 수리 품질 저하 문제 개선 필요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현장 점검 및 지자체 워크숍 실시 등

■ 문화재수리업 역량 강화 기반 구축 필요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수리업 기술 수준 편차 해소 및 역량 강화 필요
 - 수리현장 공개 확대, 수리업체 수리능력 평가·공시 등
- 문화재수리업 종사자로서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 자격증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수리 관련 인력 전문가 제고 기반 구축 필요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수 교육체계 구축 필요
 - 수리기술자 의무보수 실시 등
- 문화재수리 관련 국제 교류 강화 필요
 - 해외 수리현장 연수 실시 등

●● 3. SWOT 분석

강점(Strength)

-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 예산 증가
- 국민 생활수준 향상
- 시민사회 향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약점(Weakness)

- 문화재수리 예산 부족
- 문화재수리 기술 축적 부족
- 등록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어려움
- 문화재 수리기술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취약
- 취약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기반
- 문화재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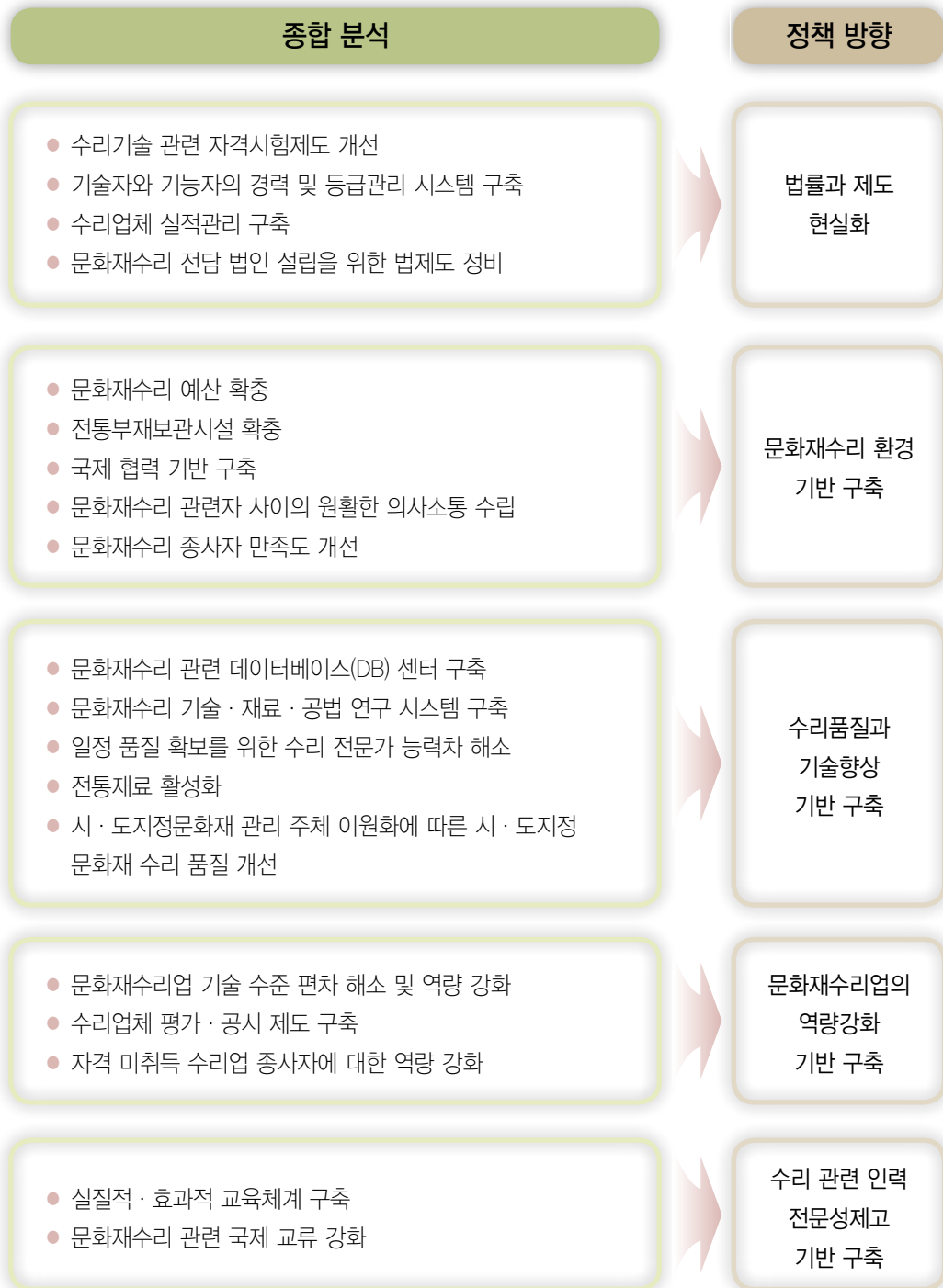
기회(Opportunity)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 정보통신 발달로 IT 기술 활용한 문화재수리 기반 확충 가능성

위협(Threat)

- 경제발전 및 개발에 따른 보존과 개발의 갈등
-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보호 유구 증가
- 문화재 노후와 원형이 되는 문화재 수리 기술의 멸실

●● 4. 종합 분석 및 정책 방향







IV. 세부과제 및 실천계획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1-1-1.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1-1-2.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1-2-1.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1-2-2.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Ⅳ. 세부과제 및 실천계획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과제 개요

■ 개관

- 문화재는 만들어질 당시의 역사, 문화, 기법, 양식 등을 반영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동시에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릴 수 없는 특성을 고려, 문화재적 가치가 후대에 전하도록 그 기반이 되는 체계적 수리 정책 기반 확립
- 문화재수리 정책은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도 그 대상이므로 이들 문화재의 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 계승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방향 모색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세부과제 1-1-1〉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 기본방향

- 문화재 원형 보존·계승을 위한 법 제도 보완 정비
- 기술력 변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제도 마련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지속적 개정·보완 추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후속 기준 마련

■ 추진실적 : 2009~2013 / 1.15억 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0.2.4 / '11.2.5)
- 문화재수리 법령 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 연구용역('10 / 0.32억 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12~'13)

※ 주요 개정 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 하위법령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13 / 0.83억 원)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 관리 세부 기준(안) 마련('13)

■ 추진계획 : 2014~2018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 관리 관련 법률 일부 개정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14~'15)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의 복원 및 활성화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14~'15)
- 문화재수리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 지속 정비('14~'18)
 -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기준강화, 부실공사 관련자 행정처분 기준강화, 하도급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고, 거짓통보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무감리 대상을 수리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고증설계, 설계변경, 준공설계 전 과정에 실측설계기술자 지속 참여 의무화 제도 마련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운영의 공인전문기관 위탁
 - 기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개정 추진

〈세부과제 1-1-2〉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 기본방향

- 수리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기준 재·개정
- 문화재수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자재의 규격·품질, 수리대가 지급 등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마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수리 관련 지침·기준 등 정비, 보급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을 통한 품셈 개선

■ 추진실적 : 2009~2013 / 17억 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정('10.12.22)
-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보급('11.8.22)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11.2.1) 및 개정('12.7.30)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정('11.5.26) 및 「감리업무 수행 지침」 마련('12.2.9)
-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마련('12.12.24)
- 「문화재수리표준 품셈」 정비('09~'13년/ 12.4억 원 / 16공종 198항목) 및 고시('11.4.11 / '12.2.17 / '12.4.27 / '12.6.11 / '12.8.6)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연구 용역('13 / 0.88억 원)
 - 기존 품셈 16공종 198항목에 보존처리 세척 등 5항목 추가 제정
 - '12년 개정·완료된 표준품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전통수제기와·전돌 제작기준 마련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개정 고시('13.5.20)

■ 추진계획 : 2014~2018 / 12억 원

- 문화재수리업 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마련 시행('14~'18)
 - 전년도 문화재수리 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 수리능력 평가 방안 등 문화재수리업 실적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안 마련 시행
- 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및 등급 관리 세부기준 마련 시행('14~'18)
 - 유사 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 마련 및 경력에 따른 등급 기준 마련 등 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및 등급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안 마련 및 이에 따른 현장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실명제 도입('14~'18)
 -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능자 등 공사 참여 관계자 공개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상시 정비·보급 및 모니터링('14~'18 / 12억 원)
 - 매년 3항목 내외 신규 품셈 제정
 - 매년 5항목 내외 기존 품셈 실사 개정
 - 개정 표준품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
- 문화재수리 재료 전반에 대한 규격·품질·제작 기준 마련('14~'18)
 - 전통안료, 초가지붕 재료, 전통철물, 벽체 미장 재료, 온돌용 석재 등
 - 전통재료 인증제도 도입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세부과제 1-2-1〉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 기본방향

- 문화재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포함)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 문화재수리(실측설계 포함)에 대한 평가 실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문화재수리 평가 실시('01.9.8 :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제도 도입)를 통해 수리품질 향상 도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요약

-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리금액 5억 이상, 실측설계금액 3천만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에 대하여 평가
- 평가결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우수업자 지정 가능
- 우수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경감 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수리공사 평가 실시 및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 평가 대상 : 수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제도 개선 실시

※ 평가 개선 추진 배경

- 평가발주청(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다른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를 실시하므로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고, 우수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미미
- 공정하고 합리적인 우수업체 지정 가능한 방안 모색 실시 및 이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 필요
- 평가 대상 금액 기준의 합리적 조정, 현장 공개 및 전통기법 사용 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평가 대상에 감리업 포함 등 제도 개선 필요

■ 추진실적 : 2009~2013

- '04년~'12년 : 매년 시공평가 추진 및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평가년도	평 가 대 상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총 건수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2009년	6	1	5	실측설계 1
2010년	7	2	5	실측설계 1
2011년	13	2	11	실측설계 1
2012년	9	5	4	문화재수리 1, 실측설계 1
2013년	19	3	16	문화재수리 1, 실측설계 1

■ 추진계획 : 2014~2018 / 4억 원

-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연구용역('14년, 0.6억 원)
 - 문화재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시 평가 전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개선방안 수립 및 인센티브 강화
 - ※ 현행 법령 상 인센티브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감경만 가능
 - 학·협회가 적극 참여 가능한 평가 방안 모색
 - 시·도지정문화재수리 평가는 지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모색
 - 수리 대상 문화재가 대부분 평가될 수 있도록 현행 5억 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평가 대상 금액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 현장 공개 관람 및 전통기법 사용 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 수리업 평가 대상에 감리업 반영 검토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추진('15~'17)
- 시공평가 추진 및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확대 추진('14~'18 / 3.4억 원)

〈세부과제 1-2-2〉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 기본방향

- 시·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수리를 위한 문화재청 기술지도 지원 강화
- 지자체의 문화재수리 역량 강화 및 문화재청 수리전문가 인력풀 활용

■ 주요 사업 내용

- 시·도지정문화재 현장 점검을 통한 기술지도 지원
- 문화재수리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및 순회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09~2013 / 0.02억 원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대상에 시·도지정문화재 포함 실시('12~'13)
- 문화재수리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11~'12)
- 지자체의 시·도지정문화재수리 역량 강화('13년, 0.02억 원)
- '13년 수리현장 우수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문화재수리 관련 관리 조직 분포 현황(괄호 안 %) ('11.6.30 기준)

구 분	과단위 조직	계단위 조직	주무관담당 조직	사업소 조직	관리조직 없음	계
8개도/특별자치도	6(3.6)	73(44.2)	85(51.5)	1(0.6)	0(0.0)	165
특별시/6대광역시	3(3.6)	14(16.9)	59(71.1)	2(2.4)	5(6.0)	83
계(지방자치단체)	9(3.6)	87(35.1)	144(58.1)	3(1.2)	5((2.0)	248

■ 추진계획 : 2014~2018 / 1억 원

- 시·도지정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기술지도 실시 확대('14~'18)
- 시·도지정문화재수리에 문화재청 수리전문가 인력풀 활용 확대('14~'18)
- 문화재수리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확대('14~'18)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현장 우수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확대('14~'18 / 1억 원)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 2-1-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 2-1-2.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 2-1-3.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 2-1-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 2-2-1.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 2-2-2.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 2-2-3.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2-2-4.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과제 개요

■ 개관

- 문화재수리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하도록 법률에 명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은 수리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및 전문기술센터 구축 외에도 자격시험 제도 및 교육체계 등이 근간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개선·구축·강화 등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계승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모색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세부과제 2-1-1〉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 기본방향

- 중요 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을 도모
- 문화재수리 현장별로 전문적인 기술지도단 구성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설계심사위원회 및 기술지도단 구성 운영
- 설계심사위원회 회의록 발간 및 배포

■ 추진실적 : 2009~2013 / 8.5억 원

〈설계심사〉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예규 제67호, '09.6월)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예규 제85호, '10.7월)
 - 위원 위촉을 '1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확충
- 설계심사위원 145명으로 확대하여 재위촉('11. 6월)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 '09년 11회 50건, '10년 20회 106건, '11년 13회 42건, '12년 16회 39건, '13년 15회 15건

〈기술지도〉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정(예규 제70호, '09.8.20)
- 2010년 기술지도단 운영(주요 공정별 기술지도 실시, 215회)
- 2011년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기술지도대상 사업 분류(110건)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개정(예규 제95호, '11.4.1)
 - 기술지도 수당을 문화재위원회에 준해서 지급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실시 : '09년 142건 165회, '10년 141건 215회, '11년 110건 111회, '12년 111건 105회, '13년 110건 110회

■ 추진계획 : 2014~2018 / 11.25억 원

- 현지설계심사 활성화('14~'18)
- 설계심사위원회 및 기술지도 위원 인력풀 확대('14~'18)
 - 원로 전문가, 수리업계 현직 전문가 등
-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술지도 확대('14~'18)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회의록 DB 구축('14~'18)



〈세부과제 2-1-2〉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협회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 종사자 대상으로 문화재수리 현장의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개선방안 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결과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순회 교육을 통해 문화재 종사자에게 인식개선을 통한 수리기술 향상 도모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주요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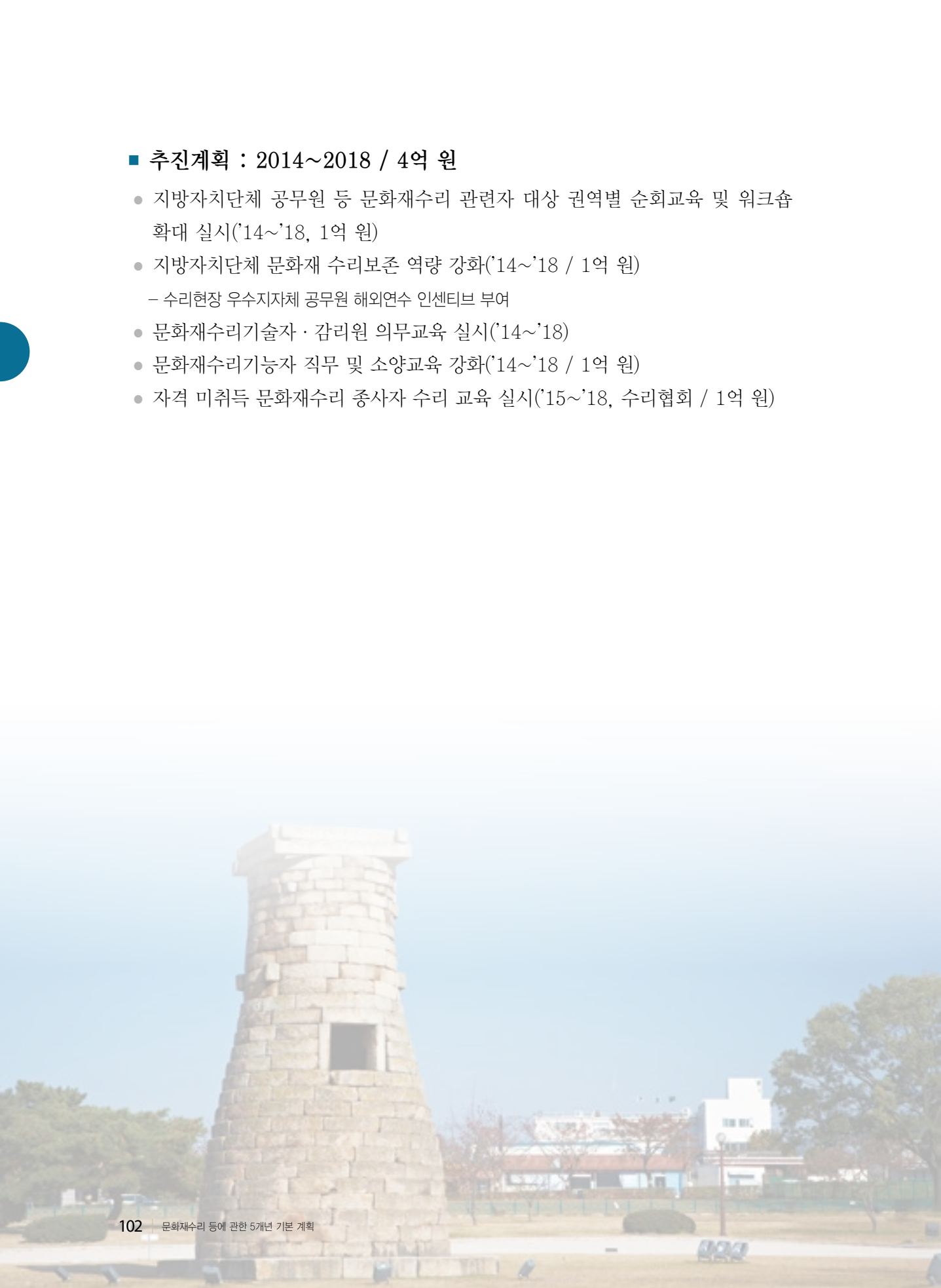
- 문화재수리현장 인식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순회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기술자·감리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11~2013 / 0.4억 원

- 문화재수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 및 순회교육 실시
 - 지자체 공무원 등 수리 관련자 역량강화 워크숍('11~'12 / 0.15억 원)
 - 개정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12 / 0.1억 원)
 - 수리공사 현장점검결과 우수 및 미흡사례 전파 워크숍('12 / 0.07억 원)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수리보존 역량 강화('13, 0.08억 원)
 - '13년 수리현장 우수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수리 종사자 수리 교육 실시('11~ '13, 전통문화교육원)
- 문화재수리기능자 직무 및 소양교육 지원('09~'13)

■ 추진계획 : 2014~2018 / 4억 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문화재수리 관련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및 워크숍 확대 실시('14~'18, 1억 원)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수리보존 역량 강화('14~'18 / 1억 원)
 - － 수리현장 우수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수리기술자·감리원 의무교육 실시('14~'18)
- 문화재수리기능자 직무 및 소양교육 강화('14~'18 / 1억 원)
- 자격 미취득 문화재수리 종사자 수리 교육 실시('15~'18, 수리협회 / 1억 원)



〈세부과제 2-1-3〉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 기본방향

- 문화재수리 관련 자료 및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 축적과 보급을 통한 문화재수리 기술력 증진
- 문화재수리 관련 전문 학(협)회 등과 협업으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수리기술 전문 역량 강화 및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성의 대내외 적극 홍보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수리 관련 자료 축적 및 기술 자료 발간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술대회 개최

■ 추진실적 : 2009~2013 / 2억 원

- 전통기와 및 전통전돌의 활성화 방안 연구('12년 / 0.68억 원)
- 2012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발간('12년 / 0.05억 원)
- 문화재수리 기술자료 '문화재이야기' 발간('12년, 2회 / 0.47억 원)
- 전통재료 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13년 / 0.85억 원)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개정(전통수제기와 · 전돌 제작기준 마련, '13년)
- 시 · 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13년)
 - 시 · 도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정 추진

■ 추진계획 : 2014~2018 / 6억 원

● 문화재수리기술 관련 전문자료 발간 확대('14~'18 / 4억 원)

-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이야기 발간('14~'18 / 1억 원)
- 전통재료 관련 자료집 등 발간('14~'18 / 1억 원)
- 표준품셈 부분 개정 발간('14~'18 / 1억 원)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전체 개정 발간('15 / 1억 원)
 -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시방서 내 용어·공법 등 불일치 내용 개정 등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통합관리 확대 추진('14~'18)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정('14~'15)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통합관리 실시('15~'18년)

● 학(협)회 협력을 통한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강화('15~'18 / 10억 원)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술대회 개최('14~'18 / 2억 원 /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개최('15 / 3억 원 / 한국건축역사학회)
- 세계 국제학술대회 개최('16 / 5억 원 / 한국건축역사학회)

〈세부과제 2-1-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 기본방향

-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건축부재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 시대별 건축문화재 기술·기법의 변천 및 발달 과정 등 체계적 연구

■ 주요 사업 내용

- 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1, 건립대지(30,000㎡), 연면적 13,000㎡,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건립
- 건축부재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건축재료 연구 및 문화재수리 관련 DB 구축

※ 외국 건축부재보존센터 사례

국가	기관	소속	주요기능	비고
프랑스	프랑스 건축·문화유산 박물관	프랑스 문화부	보관, 전시 교육, 연구	고건축부재 6,000여점 보관 건축물 모형전시 등
일본	평성궁적자료관	나라문화재연구소	보관, 전시	출토 및 문화재수리시 발생부재
	아스카자료관	나라문화재연구소	보관, 전시	〃
	호류지 대보장원 수장고	나라현 문화재위원회	보관	호류지 금당 화재부재 재조립
독일	바이에른주 보존사무소	바이에른주	보관, 교육	전통부재수집보관 전통기술재현교육

■ 추진실적 : 2012~2013 / 67.67억 원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용역('12)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실시설계용역('13)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1차공사('13)

■ 추진계획 : 2014~2016 / 223.93억 원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14~'16 / 222.93억 원)
- 수리 관련 DB 구축 기반에 관한 연구 용역('16 / 1억 원)
- 건축부재 보존·연구·전시·교육 및 수리 관련 DB 구축('17~'18)
-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추진('18)
- 센터 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추진('14~'16)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개요

- 목 적 :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효율적인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전통 재료·기법 전승의 공익적 업무를 전담 수행
- 법적지위 : 국가를 대신하여 전통건축 부재 관리 및 전통재료 수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법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근거 규정
- 기구 및 정원 : 35명(이사장, 사무총장, 5실 12팀)·기획운영 6, 부재정보·보존연구 14, 전통 재료 조사·수급관리 9, 전시·홍보 9
- 임 무
 - － 전통건축 부재에 대한 체계적 보존 및 조사·연구 전담
 - － 전통재료 및 기법 조사·연구·교육, 전통재료의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전통기법 전승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세부과제 2-2-1〉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 기본방향

-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 구축
- 문화재 중요도에 따라 적정 기술력을 지닌 수리업자 및 수리기술자·기능자 배치를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품질향상 도모

※ 제도 필요성

- 기술 인력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적관리로 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경력 증명의 곤란 해소
- 문화재 중요도에 따른 최적의 기술 인력과 문화재수리업자 선정 가능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원형보존 및 계승에 기여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 및 수리능력 평가·공시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 추진실적 : 2012~2013 / 0.83억 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12.11월 국회 제출, '13년 국회 검토)
 -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실적관리), 경력관리 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실적·경력 관리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13.3월 ~11월 / 0.83억 원)

※ 주요 내용

- 타 분야 실적 및 경력관리 실태 조사
- 문화재수리업 종사자 등 관계자 설문조사
- 실적 및 경력관리 하위법령안 마련
- 신고절차, 수리능력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안 마련

- 문화재수리 실적·경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추진('13)

■ 추진계획 : 2014~2018 / 4.6억 원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 관리 시스템 마련(정보화기획팀)('14)
- 문화재수리 실적·경력 관리 시행('14~'15, 문화재청 / 1억 원) 및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문화재수리협회와의 업무 협조
 - 문화재수리 중앙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15~'18)
- (사)문화재수리협회에 실적 및 경력 관리 업무 위탁 실시 및 지원('16~'18 / 3.6억 원)

〈세부과제 2-2-2〉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 기본방향

-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할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확보
- 근대문화재와 전통문화재와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별력을 갖춘 국가자격 시험 제도 마련 및 응시자 편의 고려

※ 시험제도 개선 추진 배경

- 1971년 시험 도입 이후 문화재수리 및 보존기법 등에 많은 변화와 더불어 제도 및 학문의 발달이 있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시험 과목의 변화가 없었음
- 양식, 재료, 기법 등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전통문화재와 근대문화재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시험 제도의 필요성 나타남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 특성 및 고도화된 전문성을 반영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추진
- 시험응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시험 제도 개선

■ 추진실적 : 2011~2013 / 0.55억 원

- 수험생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문화재수리공사 비성수기에 시험시행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11)
 -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위한 시험공고 시기 연장(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추진 협의 및 시행('13)
- 문화재 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13.2.18, 한국산업인력공단)

－ 현행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제도 현황

• 합격기준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또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행 종류별 필기시험 과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4)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 추진계획 : 2014~2018 / 2억 원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14, 1억 원)
 - 전공과목 비중 확대 개편 및 한국사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등 전문성 강화 반영 제도 마련
 - 1차 전문지식 면접, 2차 현장실무능력 면접 등 심층면접제도 도입
 -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및 수습 의무화, 등록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도입
 - 표구업 등 수리기술자 폐지 6개 분야(표구·조각·칠공·도금·모사·박제 및 표본) 등에 대한 종목 신설 여부 및 종목 명칭 등 검토
 - 시험 응시료 실비 책정 검토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응시료 관련 1차 및 2차 면접 별도 책정 검토
- 국가자격시험 개선 방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15~'16, 1억 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일 개선 시행('14)
 - 시험시행 시기는 문화재수리공사 비성수기(3월)에 실시
- 개선방안 법제화에 따른 후속 조치('17~'18)



〈세부과제 2-2-3〉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기본방향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리 기술 역량 증진 및 수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
- 소수의 연구자 등 전문 인력 기반이 취약한 학회 등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문화재 수리 분야의 전문성 및 국제적 역량 확보 기반 구축

■ 주요 사업 내용

- 수리 기술 관련 연구 지원 및 전문자료 보급 확대
- 문화재수리 관련 학술대회 개최

■ 추진실적 : 2009~2013

- 문화재수리현장 개선방안 마련 합동토론회 개최('12)
- 문화재수리 관련 학술대회 개최('13)

■ 추진계획 : 2014~2018 / 4억 원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회 연구 지원 실시 및 확대('15~'18 / 2억 원)
-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 자료 학계 및 업계 보급 확대('15~'18 / 2억 원)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공동 연구 성과 발표

〈세부과제 2-2-4〉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 기본방향

- 수리기능분야 장인 발굴과 기능인들의 전통 기능을 장려하고,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개최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문 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윤리의식 함양

■ 주요 사업 내용

-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개최
- 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 교육 지원

※ 작품전 연도별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출품자	회차	일시	출품자
제1회	1993.5.12~5.18	49명	제7회	2004.10.14~10.31	127명
제2회	1994.5.10~5.24	57명	제8회	2005.9.24~10.12	170명
제3회	1996.10.8~10.27	63명	제9회	2008.10.17~10.31	165명
제4회	1998.10.24~11.14	108명	제10회	2010.10.7~10.18	170명
제5회	2000.10.23~11.2	114명	특별전	2011.5.24~5.27	64명
제6회	2002.10.2~10.20	107명	제11회	2012.10.18~10.22	124명

■ 추진실적 : 2009~2013 / 0.62억 원

-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개최('11~'13 / 0.6억 원)
- 문화재수리현장 인식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12 / 0.02억 원)

■ 추진계획 : 2014~2018 / 7억 원

- 기존 격년 개최 작품전 확대하여 매년 실시('14~'18 / 1.5억 원)
-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및 개별 작품전 출품 지원 강화('15~'18 / 4억 원)
- 문화재기능인 작품 구입하여 부재보관소에 전시('15~'18 / 0.8억 원)
- 문화재기능자 용어 개정 등 자긍심 고취 방안 연구('16 / 0.7억 원)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 3-1-1. 문화재감리 시행
- 3-1-2.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 3-1-3.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3-1-4.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 3-2-1.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 3-2-2.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 3-2-3.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 3-2-4.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과제 개요

■ 개관

-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은 기술지도 및 감리 등 직접적인 품질 제고 방안과 함께 전통재료 활성화 방안 및 국제교류 협력 등 품질 기반 강화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모색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세부과제 3-1-1〉 문화재감리 시행

■ 기본방향

- 문화재 의무 감리제도 도입('12.2.5 시행)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중 주요 수리에 대하여 감리 수행토록 고시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기반 마련
-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감리대가 기준의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중 주요 수리에 대하여 감리 시행
 - 의무 감리 대상 : 예정금액 5억 원 이상의 지정문화재 수리, 예정금액 7억 원 이상의 주변 정비,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 시·도지정문화재도 지자체별로 국가지정문화재 감리기준에 준하여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감리 시행

■ 추진실적 : 2011~2013 / 20.52억 원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 제정('11.5.26)
- 의무 문화재 감리제도 시행('12.2.5)
 - 대상 : 5억 원 이상의 지정문화재 수리, 7억 원 이상의 문화재 주변 정비
-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 지침 제정('12.2.9)
- 의무감리대상사업 외 2013년도 문화재 감리 대상 사업 고시('13.1월)
-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확대 관련 수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3)
 - 감리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수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추진계획 : 2014~2018 / 190억 원

- 문화재 감리 대상 사업 조사·선정 및 고시('14~'18)
-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감리대가 기준 운용('14~'18)
 - 지침 및 기준 개정 필요시 개정 고시
-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확대 관련 수리법 시행령 공포·시행('14)
 - 감리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수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감리자의 자격 기준 강화 법제화 추진('16~'17)
 - 현행 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자를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 경력자로 강화

〈세부과제 3-1-2〉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 기본방향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추진 및 이에 따른 전문성 강화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 문화재 중요도(국보·보물·세계유산 등) 및 해체·복원 기술의 난이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 직접 집행하고, 또한 전통재료·도구 활성화 및 품셈의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함으로써 원형보존 및 품질 향상을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에 대한 직영사업 추진

※ 직영사업 기존 추진 현황

- 감사원 감사('99.6.23) 시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설계·시공한 후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01년부터 '07년까지 직영사업 추진
- 문화재의 중요성, 공사의 난이도, 시급성 등을 고려 직영사업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사업에서 매년 40여억 원 확보하여 직접 집행 감독

- 전통재료·전통도구 활성화 및 품셈의 테스트베드로서 직영사업 활용

■ 추진실적 : 2009~2013 / 250억 원

- 승례문 복구사업('09~'13 / 250억 원)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도 신청서 접수 및 대상사업 선정('13)
 - 매년 국보·보물 등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내외 선정

■ 추진계획 : 2014~2018 / 200억 원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직접사업 실시('15~'18 / 200억 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시·도 신청서 접수하여 대상사업 선정 또는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상사업 직접 선정
 - 아제당(운현궁 사랑채) 이건('15)

〈세부과제 3-1-3〉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기본방향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 원형보존을 위한 사전 현장조사, 고증조사 등 수리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자치단체 합동점검 실시 및 인식개선 워크숍을 통한 문화재 품질 개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에 의거,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에 기여

■ 주요 사업 내용

- 지정문화재 수리 현장 점검 실시 및 인식개선 워크숍 실시
 - － 현장점검 완료 후 인식개선 워크숍 개최하여 우수사례 확산교육 실시
 - － 권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지자체에 해외 수리현장 연수 기회 부여

※ 워크숍 추진 배경

- － 현장점검 이후 문제점 지적 및 조치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수리 현장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공유를 통하여 문화재 수리 현장에 대한 인식개선 중요

■ 추진실적 : 2010~2013

- 현장점검 : '10년 214개소, '11년 229개소, '12년 128개소, '13년 200개소
- 문화재수리현장 인식개선 및 품질향상 워크숍 실시('12~'13)

■ 추진계획 : 2014~2018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현장점검에 감리점검 포함 확대 강화('14~'18)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현장점검 확대 실시('14~'18)
- 문화재수리현장 점검 후 인식개선을 위한 워크숍 권역별 실시
 - － 우수사례 지자체에 대한 홍보 및 해외 수리현장 연수 기회 부여를 통해 수리현장 인식개선 동기 부여 확대

〈세부과제 3-1-4〉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 기본방향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 확대로 국내외 방문객에 우리 문화재 수리 기술의 고유성 홍보 강화 및 문화재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 고양과 더불어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긍심과 책임감 제고 도모
- 가림막, 가설덧집 등 문화재 수리 현장 시설 개선 및 현장 내 전통 기법 시연을 통해 현장 관리를 통한 수리 품질 향상 및 무형의 수리 기법 계승 기반 확보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 및 전통기법 시연 실시
- 안전성 확보 및 홍보용 가림막, 가설덧집 등 현장 시설물 개선 실시

■ 추진실적 : 2009~2013

- 숭례문 주말 현장 공개 관람('08~'12 / 방문자수 28,187명)
- 숭례문 화재3주기 목공사, 석공사, 철물 가공 시연('11.2.10)
- 경복궁 내 숭례문 치목장 일반 공개('11.2.11~6.3 / 방문자수 387명)
-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이의상의 숭례문 석재 할석·쌓기 시연('12.6.5)

※ 문화재보호법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 : 2014~2018

- 가설덧집 및 현장 가림막 등 현장 시설물 개선 확대 권장 유도('14~'18)
- 직접사업 등 중요 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관람 실시 확대('15~'18)
- 전통 수리 기법 특성을 알려주는 시험체 비치 권장('15~'18)
 - 짚여물이 포함된 것과 미포함된 내림마루 및 벽체 등 시험체 제작 비치
- 직접사업 수리현장 공개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통수리기법(목재·석재·철물 가공 및 단청 시채 등) 현장 시연 권장 유도('15~'18)
 - 문화재보호법 제50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적극 활용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세부과제 3-2-1〉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 기본방향

- 현대적이고 규격화된 재료 사용으로 품격 저하된 문화재에 대하여 전통재료 사용을 통한 보수로 문화재 품격 유지 및 전통기법 전승
- 전통재료 생산업체 및 장인의 지원, 육성으로 문화재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의 맥 계승 및 문화재 품질 증진

■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제작체계, 품질 및 생산기준 등 마련
- 건축문화재 전통재료 전반에 걸친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추진실적 : 2009~2013 / 6.76억 원

- 승례문 복구용 전통기왓가마 연구용역('10 / 0.14억 원)
- 전통기왓가마 1기 복원('10 / 0.6억 원)
- 전통기왓가마 3기 설치('11 / 0.45억 원)
- 전통기와 및 전통전돌 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12 / 0.67억 원)
- 전통수제기와 · 전돌 제작 기준 마련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고시('13.5.20)
- 2013년 전통재료 제작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13 / 0.85억 원)

■ 추진계획 : 2014~2018 / 41억 원

- 문화재청 직접사업(궁능원 보수정비 등) 추진 시 전통재료 사용 확대 및 중요 문화재수리 시 전통재료 사용 권장 유도('14~'18)
- 전통 수리 기법 파악을 위한 문화재수리 기록 조사('15 / 2억 원)

- 지역별 건조물문화재 수리재료 현황 조사('15~'18 / 4억 원)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DB 구축 ('16~'18 / 6억 원)
- 전통단청재료 활성화 ('14~'18 / 8억 원)

- 전통단청 활성화 방안 연구('14 / 1억 원)
- 전통안료 및 아교 제작 실험('15~'17 / 6억 원)
- 시범단청('18~ / 1억 원)

- 지붕 재료 활성화 ('14~'18 / 6억 원)

- 초가지붕재(짚·띠·역새 등) 활성화 방안 연구('14 / 1억 원)
- 지역별 지정문화재 지붕 재료 분석·조사('15 / 1억 원)
- 초가이영 제작 지원('16~'18 / 3억 원)
- 특수지붕재(청판·굴피·너와 등) 활성화 방안 연구('18 / 1억 원)

- 전통철물 활성화('15~'18 / 6억 원)

- 지역별 지정문화재에 사용된 철물 현황 조사('15~'16 / 2억 원)
- 지정문화재 철물재료 조직 및 성분조사 분석('17 / 2억 원)
- 전통철물 제작 실험('18~ / 2억 원)

- 목재 수급 활성화 ('18~ / 5억 원)

- 지역별 문화재수리 목재 수량·수종 조사('15~'16 / 3억 원)
- 문화재수리용 생산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17 / 1억 원)
- 문화재수리용 목재 수종별 품질 기준 연구('18~ / 1억 원)

- 기와 및 전돌 활성화 ('15~'18 / 2억 원)

- 근대 기와 및 벽돌 활성화 방안 연구('15 / 1억 원)
- 한식공장제기와(KS기와) 실태 조사 및 성능개선 방안 연구('17 / 1억 원)

- 석재 수급 활성화 ('18~ / 1억 원)

- 문화재수리용 석재 수급 활성화 방안 연구('18 / 1억 원)

- 미장재 수급 활성화('18~ / 1억 원)

- 멸실 미장재료 및 기법 조사 연구('18 / 1억 원)

〈세부과제 3-2-2〉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 기본방향

- 산업고도화와 경제성 추구 속에서 잊혀져가는 문화재수리 전통도구를 수리 현장에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문화재 품질 향상 및 전통기법 계승
- 전통도구 사용을 통한 전통기법을 이어가는 장인의 지원, 육성으로 문화재인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의 맥 계승

■ 주요 사업 내용

- 중요문화재 수리 시 인력가공 등 전통도구 사용
- 문화재수리 현장 내 전통도구 사용 공개 시연

■ 추진실적 : 2009~2013

- 인력품(전통기법)과 기계품(기계시공) 구분 이원화한 품셈 고시('11.4.11)
- 승례문 화재3주기 목공사, 석공사, 철물 가공 시연('11.2.10)
-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이의상의 승례문 석재 가공 시연('12.6.5)

■ 추진계획 : 2014~2018 / 1억 원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인력품에 의한 전통도구 사용 확대('14~'18)
-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제작 및 활용기술에 관한 연구 용역('15 / 1억 원)
- 직접사업 등 중요 문화재 수리 시 전통도구 시연 공개 확대('14~'18)
 - － 방문객 대상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통도구 시연 권장 유도('14~'18)
 - － 문화재보호법 제50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적극 활용

〈세부과제 3-2-3〉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 기본방향

-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건축문화재 수리정책의 발전방안 마련
- 문화재 수리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한 수리 개선 및 전문인력 인적교류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주요 사업 내용

-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 문화재 수리관련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 보존관리 정책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

■ 추진실적 : 2009~2013 / 2.26억 원

- 한·일 건축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실시('04~'13 / 양국 교차개최)
 - * 한일문화재교류 토의기록(ROD)('03.4)
- 한·중 건축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신규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실시('11)
 - * 한중문화재교류 합의서('05.11.3)

■ 추진계획 : 2014~2018 / 16.8억 원

-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14~'18 / 2.8억 원)
- 북한 전통건축 자료수집·연구('15~'18 / 4억 원)
- 북한의 세계유산 개성 지구 수리보수 지원('15~'18 / 10억 원)

〈세부과제 3-2-4〉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건축문화재 수리에 따른 각 부위별 목재 수종, 기단부의 석재 종류 및 채석 산지, 지붕재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구축과 그 검색을 위한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수리 품질향상 도모
- 건축문화재 수리이력 및 도면·고증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향후 문화재 수리 시 관련 자료 접근성 확보 및 수리 고도화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지정문화재 수리 관련 자료 DB 구축
-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실적 : 2009~2013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 작성('09~'1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에 의무 명시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13)
- 수리이력 DB구축센터인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설계 및 착공('12~'13)

■ 추진계획 : 2014~2018 / 3억 원

-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실적자료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1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 대상에 시·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도록 개정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14~'16) 후 문화재 수리 관련 자료 DB 구축('17~'18) 및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추진('18 / 3억 원)
 - 실측설계사무소 등 문화재 수리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과제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억 원)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국 비	2	2.5	2.5	2.5	2.5	12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국 비	0.8	0.9	0.9	1.2	1.2	5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2개 과제	국 비	3.2	3.7	3.7	4.2	2.2	17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과제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억 원)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국 비	26.78	109.92	107.88	4.25	4.35	253.18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국 비	1.53	4.27	3.7	3.7	3.7	16.9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2개 과제	국 비	28.31	111.19	105.58	7.95	8.05	262.08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과제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억 원)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국 비	21	78	78	78	78	333
	지방비	9	12	12	12	12	57
	기 금	-	-	-	-	-	-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국 비	2.46	14.07	13.07	14.1	18.1	61.8
	지방비	-	-	-	-	-	-
	기 금	-	-	-	-	-	-
2개 과제	국 비	23.46	92.07	91.07	92.1	96.1	394.8
	지방비	9	12	12	12	12	57
	기 금	-	-	-	-	-	-

